변호사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심포지엄

프로그램

1. 일　시 : 2018. 5. 30.(수) 14:00~17:00

2. 장　소 : 변호사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

3. 사　회 : 신고운 사무차장(서울지방변호사회)

4. 좌　장 : 정영훈 인권이사(서울지방변호사회)

5.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14:00~14:10	개회 인사말 :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14:10~15:00	주제 1	프로보노지원센터를 통한 변호사 공익활동 활성화	
	발　제	염형국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
	토　론	송상교 변호사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박경신 교　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15:00~15:50	주제2	로펌 프로보노 활성화	
	발　제	이희숙 변호사	재단법인 동천
	토　론	강정은 변호사	사단법인 두루
		박중원 변호사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
15:50~16:00	휴식		
16:00~16:50	주제3	시니어 프로보노 활성화	
	발　제	김 한 변호사	시니어 프로보노지원단
	토　론	강용현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황윤주 실　장	서울 50 플러스 서부캠퍼스
16:50~17:00	폐회 및 기념촬영		

목 차

주제 1 **프로보노지원센터를 통한 변호사 공익활동 활성화** ····· 1

발제 염형국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

토론 송상교 변호사(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박경신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주제 2 **로펌 프로보노 활성화** ····· 39

발제 이희숙 변호사(재단법인 동천)

토론 강정은 변호사(사단법인 두루)
박중원 변호사(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

주제 3 **시니어 프로보노 활성화** ····· 67

발제 김 한 변호사(시니어 프로보노지원단)

토론 강용현 변호사[법무법인(유한) 태평양]
황윤주 실장(서울시50플러스 서부캠퍼스)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이찬희 변호사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시어 오늘 심포지엄에 참석해 주신 모든 참석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 중에는 공익활동을 전담하고 있는 변호사님도 계실 것이고, 그렇지 않은 변호사님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인권변호사라는 말을 자주 듣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권변호사가 아닌 변호사는 그럼 이권변호사냐는 농담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인권변호사가 따로 있고, 이권변호사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변호사법 제1조 제1항에는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모든 변호사의 존재이유와 사명감의 원천은 인권옹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공익변호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아직까지는 일부 변호사들만이 공익활동을 '나의 일'로 받아들이고 활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대다수의 변호사들은 공익활동을 통하여 변호사로서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거나, 직업에 대한 보람과 만족도를 높여나갈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변호사 공익활동에 대한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좁혀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변호사의 공익활동이 일정한 수준까지 양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변호사님들께서 공익활동을 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그동안 공익활동에 접근하기 어려웠던 변호사들의 공익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보다 높은 수준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 2016년 4월 프로보노지원센터를 개소하게 되었습니다. 프로보노지원센터는 각 공익·인권 영역별 프로보노 라운드테이블, 연사 초청 프로보노 포럼, 공익·인권 분야 전문가 초청 세미나 및 워크숍, 강연회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사랑나눔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각종 법률지원 매뉴얼을 제작하는 등 우리 회 회원 여러분들의 공익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심포지엄은 프로보노지원센터의 개소 2주년을 기념하고 변호사 공익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함께 고민해 보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 심포지엄을 위하여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좌장으로 토론을 이끌어 주실 서울지방변호사회 정영훈 인권이사님을 비롯하여 제1주제 발표를 해 주실 프로보노지원센터 염형국 센터장님, 제2주제 발표를 해 주실 재단법인 동천의 이희숙 변호사님, 제3주제 발표를 해 주실 시니어 프로보노지원단 김한 변호사님, 그리고 열띤 토론을 맡아주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송상교 변호사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경신 교수님, 사단법인 두루의 강정은 변호사님,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 박중원 변호사님,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강용현 변호사님, 서울 50플러스 서부캠퍼스 황윤주 실장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5월 30일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이 찬 희**

[주제1]

프로보노지원센터를 통한 변호사 공익활동 활성화 방안

발제 염형국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
토론 송상교 변호사(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박경신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발제문] 프로보노지원센터를 통한 변호사 공익활동 활성화 방안

염형국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

1. 들어가며 - 변호사의 공익활동은 행복한 삶을 위한 것

불쑥 어렵고도 쉬운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행복한 삶이란 어떤 삶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하는 행복한 삶은 ①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 ②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것, ③ 타인과의 관계를 잘 맺는 것, ④ 소유에 대한 욕심을 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①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

부모님의 뜻에 따라 입학한 법대 1학년 시절 아무 생각이 없던 저는 선배·동기들 흉내라도 내볼까 하여 고시공부를 해보았지만 영 적성에 맞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어영부영 대학 4년을 보내고 어쩔 수 없이 군에 입대하여 2년을 보냈습니다. 법조인이 되면 사회에서 어떠한 역할도 할 수 있겠다는 막연한 생각에 군 제대 후 진지하게 사법시험 준비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법연수원 입소 후 박원순 변호사(현 서울시장)의 특강을 듣게 되었습니다. 특강에서 박원순 변호사는 공익변호사로서의 새로운 진로를 알려주었고, 그 새로운 진로가 무척 신선하게 느껴져 흥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사법연수원 수료 직전, 용기를 내어 박원순 변호사를 찾아가 진로 상담을 청했는데, 박원순 변호사는 나와 몇 마디 나누어보시더니 아름다운 재단에 일단 출근할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저는 그 제안에 응했고, 그해 12월부터 아름다운재단에 출근을 시작하였습니다. 그것이 제 공익변호사로서의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렇게 공익변호사로서 15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법 1조에 나와 있는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는 규정은 참으로 아름다운 문구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사회가 변호사에게 기대하는 역할이기도 하지만, 변호사이기에 가능한 권능이기도 합니다. 변호사로서 우리 사

회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활동은 분명 의미 있는 일이기에 그 일에 동참하고 싶었고, 지금까지 공익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변호사 모두가 공익변호사가 될 필요는 없고,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그렇더라도 이런 일에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떠한 형태라도 참여를 하는 것이 본인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②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것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위한 조건의 하나로 나눔을 꼽고 있습니다. 나눔은 상대방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나눔을 통해 얻어지는 행복감은 나눔의 양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을 나눔활동에 참여해본 이들은 알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공익활동은 기본적으로 내가 가진 법률지식을 공익적인 활동을 위해, 소외계층을 위해 나누는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일은 당연히 자발성을 전제로 합니다. 아무리 하고 싶었던 일이라도 강제로 시키면 반발심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에 변호사 공익활동을 의무화시킨 것에 대해 변호사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되는 면이 있습니다. 변호사들이 사회 대중에게 신뢰를 얻고 사회적으로 주어진 책임을 충분히 수행한다면 이러한 의무조항은 없애더라도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③ 타인과의 관계를 잘 맺는 것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것은 행복한 삶을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익활동에 참여하다 보면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들, 착하고 좋은 분들과 인연 맺을 기회가 많습니다. 착하고 좋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게 되면 저 스스로도 더욱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자신도 좀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④ 소유에 대한 욕심을 버리는 것

변호사 수가 많아지고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 예전처럼 변호사업을 해서 돈을 잘 벌기가 어렵습니다. 1세대 인권변호사이신 한승헌 변호사님은 변호사업에 대해 면기난부(免飢難富: 굶는 것은 면할 수 있으나, 부자가 되기는 어렵다)라고 하셨습니다. 변호사로서 돈을 탐하지 말고 직업적 소명에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청년변호사 중에는 변호사 사무실 유지하는 것에도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계 유

지하기도 어려운데 무슨 공익활동이냐고 반문하실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변호사의 공익활동이 늘 퍼주기만은 아닙니다. 자기가 맡은 공익활동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 공익활동이 생계유지에도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2.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의 설립과 그간의 활동

가. 프로보노지원센터 설립의 필요성

변호사의 공익활동은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한다는 변호사의 사명 측면에서도 필요로 하지만, 일반 시민들의 변호사 직역에 대한 신뢰성 확보 측면에서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회발전의 기준이 다양하지만 사회적 신뢰라고 하는 사회적 자본이 사회발전의 척도로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계약을 하면 계약이 지켜질 것이라는 신뢰, 다른 사람도 규칙을 지킬 것으로 믿는 신뢰, 전문직들이 개인이 아닌 사회를 위해 일할 것이라는 신뢰 등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자본의 형성에서 법률가는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집단입니다. 변호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붕괴되면 심각한 사회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변호사 직역에 대한 사회적 신뢰의 확보는 변호사 직역수호 이상으로 중요한 의의를 갖습니다. 이런 점에서 변호사의 공익활동은 변호사의 직역 수호활동 이상의 가치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공익활동은 지금보다 더욱 활성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 공익활동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공익활동을 하고자 하는 변호사들이 손쉽게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을 찾을 수 있고, 변호사의 법률지원을 필요로 하는 공익단체도 수월하게 자신을 지원해줄 변호사를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해당 분야를 처음 접하는 변호사들을 위해서 관련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교육받을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는 매뉴얼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공익 영역에서의 정보인프라를 통한 정보공유가 원활히 이루어져야 하고, 선배변호사와 후배변호사와의 협업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변호사 공익활동중개센터의 필요 때문에 프로보노지원센터의 설립이 요청되었습니다.

나. 프로보노지원센터의 그간 활동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는 변호사들의 공익활동을 중개하고 지원함으로써 소수자·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을 옹호하는 사회를 함께 만들기 위해 지난 2016년 4월 개소하였습니다. 저희 프로보노지원센터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회원 변호사들의 공익활동을 지원하고, 공익활동을 하고자 하는 변호사와 공익활동을 필요로 하는 단체 혹은 개인을 연결시켜주며, 공익활동 역량을 강화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프로보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변호사들이 보다 효율적인 프로보노 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활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프로보노 라운드테이블(Probono Roundtable)

프로보노지원센터는 2017년 1월부터 지금까지 공익활동 일반, 홈리스 인권, 장애인 인권, 여성인권, 사회적 경제, 이주민·난민 인권, 아동·청소년 인권, 환경 · 동물권, 통일 · 탈북민 인권, 소비자인권, 시니어 프로보노 등을 주제로 총 11회에 걸쳐 '프로보노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였습니다.

프로보노 라운드테이블은 각 이슈를 다루고 있는 공익단체 및 공공기관 등과 그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고자 하는 변호사들이 함께 자리하여, 해당 이슈에 대한 활동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활동의 연계방안을 고민하면서 서로의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주요 프로보노 영역에서 관심 있는 변호사와 단체 실무자들이 함께 모여 해당 영역에서의 전반적인 활동현황을 공유하고, 변호사의 공익활동을 좀 더 활성화하고자 하는 라운드테이블에 대한 반응은 행사 때마다 매우 뜨거웠습니다. 앞으로는 영역별로 현재 논의되고 있거나 변호사들의 참여를 바로 필요로 하는 사안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하고 그 자리에서 변호사와 단체를 연결하는 심화 라운드테이블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2) 법률지원 매뉴얼 제작

프로보노지원센터는 변호사들이 공익활동 및 공익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참고자료로 활

용될 수 있도록 각종 법률지원 매뉴얼 발간에 힘쓰고 있습니다. 2017년 3월에는 홈리스 법률지원 매뉴얼 발간하여 홈리스의 명의도용/명의대여, 개인회생 및 파산, 위장결혼이나 상속 등 가사 문제 등 다양한 법률적 쟁점을 정리하였고, 2017년 12월에는 아동학대사건 법률지원 매뉴얼을 발간하여, 아동학대사건에서 피해아동을 적절히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절차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2018년 2월에는 공공후견인을 위한 법률지원 매뉴얼을 발간하여 공공후견심판절차 및 공공후견인의 역할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매뉴얼을 제작할 때마다 해당 매뉴얼 집필진들이 참여하여 매뉴얼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이주민 법률지원 매뉴얼, 난민 법률지원 매뉴얼, 공익소송 실무 매뉴얼, 소비자 법률지원 매뉴얼 등을 준비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필요한 영역마다 다양한 법률지원 매뉴얼을 발간해 나갈 예정입니다.

3) 공익·인권분야 연구활동 지원사업

프로보노지원센터는 사회 각 분야에서 공익·인권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개선방안 연구, 판례 연구 등을 위해 공익·인권분야 연구활동 지원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학대 피해 이주배경아동 보호체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비교법 연구', '염전사건을 통해 본 장애인학대사건의 효율적 사법지원 방안'을 선정하여 연구비를 지원하였고, 해당 연구가 완료된 2017년 6월에 연구결과 발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반도체·LCD 노동자의 업무상 질병 인정 사례 연구', '성별정정 허가 신청 사건의 절차 개선 및 통계 구축을 위한 기초 조사', '이웃분쟁조정과 예방을 위한 주민분쟁해결지원제도 연구', '청소년 인권교육 내실화를 위한 연구'를 지원하여, 6월에 연구결과 발표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저희 프로보노지원센터에서는 향후에도 공익·인권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연구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4) 프로보노 포럼

프로보노지원센터는 2016년부터 꾸준히 회원들의 공익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다양한 공익활동 참여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도록 사회 각 분야의 프로보노 전문가를 초청하여, 경험과 노하우를 배우고 함께 논의할 수 있는 '프로보노 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였

습니다. 프로보노 포럼은 프로보노 활동을 하고 있는 법률가 및 전문가들로부터 프로보노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는 자리입니다.[1)]

5) 전문가 초청 세미나

프로보노지원센터는 변호사가 공익활동을 전개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변호사로서의 소통전략과 특정 공익분야 활동을 위한 기초지식 등을 배울 수 있는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2)]

6) 공익활동 역량강화 워크숍

프로보노지원센터는 변호사들의 공익활동에 대한 실무 감각을 고양하고자, 공익전담변호사 및 비영리단체들의 실질적 운영과 업무진행에 있어서 필요한 주제를 가지고 소규모 워크숍을 진행하였습니다.[3)]

7) 프로보노 온라인 중개활동

프로보노지원센터는 공익활동에 열의를 가지고 있으나, 활동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는 변호사와, 법률지원이 필요하지만 어디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몰라 곤란해 하는

1) 2016. 5. 25. 제1회 프로보노 포럼/ 박주민 국회의원 '세월호와 시민참여'
2016. 6. 14. 제2회 프로보노 포럼/ 박원순 서울시장 '서울시의 인권도시 비전'
2016. 9. 30. 제3회 프로보노 포럼/ 김지형 전 대법관 '참 좋은 법률가는 그 자신이 이미 좋은 세상이다'
2016. 10. 28. 제4회 프로보노 포럼/ 박준영 변호사 '변호사로서의 자존감을 지키자'
2016. 12. 14. 제5회 프로보노 포럼/ 김혜자 '어려운 시대에 더 큰 어려움을 돌아보는 너그러움'
2017. 3. 13. 제6회 프로보노 포럼/ 최재천 교수 '이기적 유전자와 사회연구'
2017. 6. 21. 제7회 프로보노 포럼/ 송두환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률가의 사회참여, 선택인가, 숙명인가?'
2017. 7. 20. 제8회 프로보노 포럼/ 황덕남 변호사 '조정과 변호사의 역할'
2017. 11. 30. 제9회 프로보노 포럼/ 이국종 교수 'The Firm'
2018. 3. 28. 제10회 프로보노 포럼/ 홍성수 교수 '혐오표현과 소수자 인권'
2018. 5. 16. 제11회 프로보노 포럼/ 권인숙 원장 '한국 사회의 미투운동과 성폭력 대응방안'

2) 2016. 8. 26. 제1회 전문가초청 세미나, 류정희 박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아동보호 체계 및 법제진단'
2016. 11. 29. 제2회 전문가초청 세미나, 김미경 변호사 '변호사를 위한 상담론'
2017. 1. 18. 제3회 전문가초청 세미나, 이연미 부대표 '비폭력대화를 통한 의사소통 및 상담방법'
2017. 4. 14. 제4회 전문가초청 세미나, 문용갑 대표 '효과적인 갈등관리방법'
2017. 12. 18. 제5회 전문가초청 세미나, 정창수 소장 '나람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

3) 2016. 7. 12. 제1회 공익활동 역량강화 워크숍, 정민영 변호사, 정환봉 기자 '공익활동 관련 언론활용 방안'
2016. 9. 20. 제2회 공익활동 역량강화 워크숍, 전현경 실장, 김재춘 소장, '비영리단체의 홍보·모금 전략'
2016. 11. 9. 제3회 공익활동 역량강화 워크숍, Seth Gurgel 변호사, 'PILnet의 변호사 공익활동 사례'
2017. 2. 22. 제4회 공익활동 역량강화 워크숍, 정순문 변호사, 오승민 회계사, '비영리단체 세무·회계'
2017. 8. 31. 제5회 공익활동 역량강화 워크숍, 정상석 디자이너, 'SNS를 통한 공익활동 홍보기법'

시민단체를 프로보노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중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공익단체(혹은 개인)으로부터 프로보노 지원요청을 받아, 프로보노 활동을 하고자 등록한 변호사들 중 적절한 인력을 배치함으로써 효율적인 공익활동이 가능하도록 중개하고 있습니다.

8) 프로보노 사랑나눔 프로젝트

프로보노지원센터는 프로보노 사랑나눔 프로젝트로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및 그 가족들이 참여가능한 봉사활동을 정기적으로 기획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봉사활동으로 빵만들기, 벽화그리기, 연탄나르기, 어르신 배식봉사, 숲 가꾸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왔습니다. 2018년에도 다양한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으므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4)]

9) 프로보노 연계사업

프로보노지원센터는 다양한 비영리단체 및 공익변호사단체와 협력하여 간담회, 강연회 등 다양한 연계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로펌 공익전담변호사 모임과는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상호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재단법인 동천과 NPO법률지원단·시니어 프로보노 법률지원단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였고, 법조공익모임 나우와는 공익입법제안회, 공익소송 전략 강연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공익전담변호사들의 모임과도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필요한 지원을 해오고 있고, 서울시 NPO지원센터와도 'NPO 파트너 페어', 'NPO 상담소' 활동을 함께 해오고 있습니다.

최근 변호사의 공익활동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되어야 하며, 프로보노가 변호사의 중요한 사명 중 하나라는 사실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대형로펌들은 별도의 사

4) 2016. 5. 19. 제1회 프로보노 봉사활동, 구로어르신돌봄통합센터 '독거노인 생신잔치 봉사활동'
2016. 7. 7. 제2회 프로보노 봉사활동, 거리의 천사들, '노숙인 배식 봉사활동'
2016. 9. 10. 제3회 프로보노 봉사활동, 대한적십자사, '빵만들기 봉사활동'
2016. 12. 17. 제4회 프로보노 봉사활동, 밥상공동체복지재단, '연탄 나눔 봉사활동'
2017. 2. 18. 제5회 프로보노 봉사활동, 서울노인복지센터, '노인복지시설 배식봉사활동'
2017. 4. 15. 제6회 프로보노 봉사활동, 서울그린트러스트, '숲가꾸기 봉사활동'
2017. 7. 22. 제7회 프로보노 봉사활동, 웰메이드, '벽화그리기 봉사활동'
2017. 10. 14. 제8회 프로보노 봉사활동, 대한적십자사, '빵만들기 봉사활동'
2017. 12. 2. 제9회 프로보노 봉사활동, 서울노인복지센터, '노인복지시설 배식봉사활동'
2018. 1. 27. 제10회 프로보노 봉사활동, 밥상공동체복지재단, '연탄 나눔 봉사활동'
2018. 4. 7. 제11회 프로보노 봉사활동, 상록보육원, '아동보육시설 봉사활동'

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공익을 전담하는 변호사를 배치하여 지속적, 장기적 프로보노 활동을 지원하는 베이스를 구축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프로보노지원센터는 로펌의 공익전담변호사 모임과 함께 간담회를 가지고, 필요한 사안이 있을 때마다 함께 회의를 진행하며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필요한 경우 협업하고 있습니다.

3. 외국 프로보노중개기관의 사례

가. 호주의 사례

1) 호주 프로보노센터(Australian Pro Bono Center, 약칭 "APBC")

호주는 법무부가 직접 지원하는 호주 프로보노센터(Australian Pro Bono Center)[5]를 두고 변호사들의 공익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센터는 공익활동을 원하는 변호사들을 교육하고, 변호사들의 취업 형태나 전문 분야별 공익활동 가이드와 매뉴얼을 만들고 있습니다. 매년 호주 내 30개 대형로펌의 한해 공익활동 내역을 담은 '공익활동보고서'도 발간합니다. 호주 프로보노센터는 독립된 전문기관으로 호주의 변호사들의 프로보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여기서 프로보노 서비스란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를 위한 정의 실현이나 공익 실현에 관련된 활동을 말합니다.

가) 목표 실현을 위한 전략

① 호주 법조계에서는 프로보노 활동의 중요성을 높이기 위하여 그 위상을 다음과 같이 홍보
- 지속적인 지원
- 정책 개발 및 법 개정 활동
- 다양한 프로젝트와 파트너십을 통해 여러 변호사들의 참가를 유도
- 프로보노 활동 중인 사람들 간의 지식 공유 촉진을 통해 활동의 활성화를 촉진
- 프로보노 활동에 대해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알림

5) 예전의 '내셔널 프로보노 리소스 센터(National Probono Resource Center)'에서 호주 프로보노센터(Australian Pro Bono Center)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 이벤트와 포럼을 주최하거나 후원함으로써 프로보노 활동과 관련된 주요 당사자들 간에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하고, 프로보노 활동에 헌신하는 호주의 법조인들에게 상을 수여
- 프로보노 프로그램 개발자 또는 제공자들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프로보노 활동을 개발·연구

② 전문성을 강화하고 프로보노 서비스 제공 활성화를 위해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
- 호주 내 최고의 프로보노 제공 단체가 되기 위해 전문지식을 공유 및 개발
- 프로보노 서비스 제공자와 수요자에게 자료집이나 안내책자 등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
- 호주 내 프로보노 활동과 관련된 소식을 공유
- 프로보노에 대한 다양한 연구활동
- 호주 전역에서 일어나는 프로보노 활동에 대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에 대해 보고
- 프로보노 서비스를 제공 가능한 변호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센터가 승인한 프로젝트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들에게 전문성 배상(보장) 보험[6]을 제공

프로보노 파트너십과 효과적인 모델구축을 위한 실제적인 가이드[7]

Chapter 8. 지역단체가 관계를 쌓고 유지하기 위한 팁
1) 아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프로보노 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동인
:프로보노 파트너가 제공가능한 자원과 기술
:프로보노의 문화
:일하는 방식
:프로보노 파트너의 한계
:매력적인 파트너가 되기 위한 방법

8.1 초기 관계 구축 팁
- 네트워킹 기회를 만들 것: 컨퍼런스, 포럼, 연수 또는 미팅 등에 참석할 것. 그곳에서 자신이 속한 단체에 대해 말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 프로보노 중개 단체는 종종 네트워킹의 목적으로 이런 행사를 주최한다.

6) professional indemnity insurance

- 필요로 하는 법률 지원이 어떤 법적 수요를 충족시켜서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또는 동종 지역 단체의 역량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인지 분명히 할 것
- 각 파트너의 성향과 한계를 초기 계획 단계에서 파악하고 특히 갈등이 생길 수 있는 영역 또한 분명히 확인할 것
- 각자의 철학과 목표, 업무 방식 등에 대한 상호 이해를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서로 잘 협력할 수 있다는 확신을 줄 것
- 각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협의 할 것
- 협력 프로젝트에 대한 조율을 위해 걸리는 시간을 현실적인 시각으로 가늠할 것
- 각자의 역할 및 책임에 대해 형식을 갖추어 논의하고 추상적, 구체적 사안을 양해 각서 등에 명기할 것(ex. 위험 부담은 누가 지며 업무의 책임은 누가 지는가? 관리 업무는 누가 책임지고 하는가? 업무를 위한 문서 양식과 과정은 누가 만들고 수립할 것인가? 어떤 교육이 필요하고 누가 제공할 것인가?)
- 클라이언트에게 법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프로보노 서비스 제공 단체와 협력하는 지역 단체는 클라이언트에게 모종의 관계를 근거로 해당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을 알려야 할 것 (ex. 단체의 연락처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사가 누구인지에 대한 구체적 정보 등)
- 프로젝트 성과 평가 기준에 대해 결정해야 할 것

8.2 관계 유지 팁
- 무엇이 잘되고 있고 무엇이 부족한지 지속적으로 꾸준히 소통
- 뉴스레터나 행사 또는 커피를 마시면서라도 꾸준히 소통하며 소식을 공유할 것
- 정직하고 투명하게 소통할 것. 특히 문제가 잘 안 풀릴 땐 더 그러할 것
- 인수인계를 위한 준비를 할 것
- 단체 간의 관계가 끝나도 지속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에 대한 광범위한 지지를 얻을 것
- 프로보노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단체가 도움이 많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림으로써 보람을 느끼게 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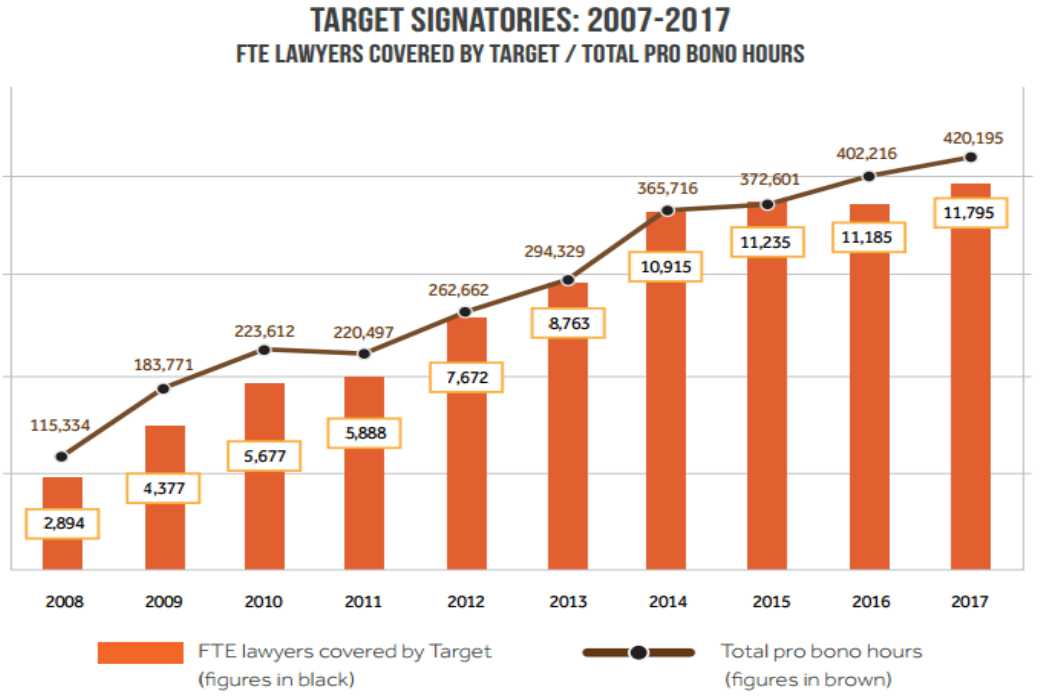
나) National Pro Bono Aspirational Target(이하 "타겟")에 대한 설명

'타겟'은 법률에 접근이 힘든 사람들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익을 위해 일하며 법조인으로서 직역상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 호주 프로보노센터가 2006년에 고안하였습니다. '타겟'은 변호사 한 명당 한 해 동안 최소 35시간 이상의 프로보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자발적으로 서명한 사람 또는 집단을 의미합니다. 타겟에는 로펌, 사내변호사,

7) 호주 프로보노센터에서 발행한 'Pro bono partnerships and models: A Practical Guide to WHAT WORKS' 중 PART 3의 일부분을 발췌정리한 것임.

사무 변호사(solicitor), 법정 변호사(barrister), 법정 변호사 협회 (barristers' chamber)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10년간 호주 프로보노센터를 통한 프로보노 활동자 수 변화[8)]**



(표) 타겟 집단의 프로보노 제공 10년간 증가치[9)]

위의 표에 따르면 초기(2008)에 비해 2017년 기준 참가자 수는 3.7배, 프로보노 제공 시간은 4배 가량 증가했습니다. 증가폭은 2013-2014년(71,387시간)이 가장 가파르고 2010-2011년(3,115시간)에는 프로보노 활동 시간 총계는 소폭 하락했으나, 전체적으로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8) Australian Pro Bono Center 타겟 참가 보고서 [2017] 참고

9) 주황색 막대는 [FTE 변호사 수 = 한 해 동안 타겟(Target) 집단의 프로보노 제공시간 총 합계 / 풀타임 노동자의 한 해 동안 전체 법정 가능 노동시간]를 의미한다. FTE(full time equivalent)는 노동 투입과 관련된 것으로, 임의의 업무에 투입된 노동력을 전일종사 노동자 수로 측정하는 방법이다. FTE가 1이면 A라는 임무에 투입된 전일종사 노동자가 1명임을 의미한다. 만약 반일종사 노동자 2인이 A 임무에 투입되었다면 A 임무에 투입된 FTE는 2가 아니라 1이 된다. 미국 연방정부는 1년간 총노동 시간을 법에서 정한 보상이 가능한 최대 노동 시간으로 나눈 값을 FTE라고 정의한다.

2012년, 영연방 법무부(The Commonwealth Attorney-General's Department)는 법률 서비스를 구매(이용)할 때 정부 부처 전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법률 서비스 제공업체 목록(the Legal Services Multi-Use List: LSMUL)을 만들었습니다. LSMUL에는 이전부터 영연방 부처에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던 로펌이나 법률 서비스 제공회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법무부가 내건 조건을 충족해야만 목록에 포함될 수 있었는데, 이 조건에서 프로보노 활동 비율을 고려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목록에 들기 위한 요건에 프로보노와 관련된 항목이 2014년에 추가 되면서 프로보노 활동이 급증했습니다. 법률서비스 제공업체 목록의 지원 관련 안내문에는 "a. 지원자들은 반드시(must) 타겟 집단에 들겠다고 서명하거나, b. 회계연도 1년을 기준으로 프로보노 활동을 통해 얼마간의 금전적 가치를 산출하겠다고 약정 해야한다"고 명시[10]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2014년 7월 1일부터 50명 이상의 변호사가 소속되어 있는 로펌은 실질적인 프로보노 활동 시간을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빅토리아 주 법률 서비스 제공 업체 목록(Victorian Government Legal Services Panel)
- 23개 로펌 등록(2016년도 기준)
- 빅토리아 주 정부 기관은 "빅토리아 주 법률 서비스 제공 업체 목록" 또는 "빅토리아 주 정부 사무변호사 사무소"를 통해서만 법률 서비스를 이용해야만 함
- 2002년에는 총 수익 중 5% 이상을 프로보노 활동하는데 사용해야하며 최대 15%까지 지출하겠다고 약정 가능. 대부분이 15%를 약정. 2015년 규정 개정으로 최소 10%이상의 수익을 프로보노 활동에 지출해야하며 이는 의무 이행 사항이 됨. 이전과는 달리 약정 상한선을 없앰. 이 목록에 들어있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이행사항을 지켜야 함.
- 여기서 프로보노 활동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지역 법률 교육, 법 개정 활동, 자선 단체나 지역단체를 위한 무료 법률 조언 또는 변호, 지역 법률 센터나 지역 단체에 법적 또는 기타 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인력을 임시 파견하는 것과 금전적 또는 다른 방법(필요 기기 제공, 스폰서십 체결)으로 지원하는 것

법률 서비스 제공 업체 목록 지원 기관의 요건 주(州)별 비교
:https://www.probonocentre.org.au/provide-pro-bono/government-tender-arrangements/comparison/

2011년 기준 호주 변호사 수는 56,000명 정도로 추정되고, 이 당시 호주 전체 법조인 중 10.5%가 프로보노 활동에 참가했으며, 2017년에는 2011년에서 변호사 수가 크게

10) Australian Pro Bono Center 타겟 참가 보고서 [2014] 6p 참고

늘지 않았음에도 프로보노 활동에 참여하는 FTE 변호사 수는 약 20% 증가해서 두 배의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 타겟별 분포 분석(2017년도 기준)[11]

① 대형 로펌 [최소 50명 이상의 (FTE)변호사로 구성된 로펌과 법률 서비스 제공회사]
- 39개 단체에서 11,297명의 FTE 변호사가 프로보노 활동을 함(작년대비 543명 증가)
- 1명당 연평균 프로보노 활동 시간: 35.6시간 (16년도: 36.4시간)
- 35시간 또는 그 이상 충족: 20개 대형 로펌(51.3%) (16년도: 18개)
- 참가율: 55.6%; (16년도: 57.8%)
- 25(?) expect to meet the Target in FY 2018

② 소형 로펌 [50명 미만 로펌]
- 36개 단체에서 450명의 FTE 변호사가 프로보노 활동을 함(작년대비 31명 증가)
- 1명당 연평균 프로보노 활동 시간: 33시간 (16년도: 16.3 시간)
- 35시간 또는 그 이상 충족: 11개 로펌(31.4%); (16년도: 9개)
- 참가율: 73.9%; (16년도: 68%)
- 14 expect to meet the Target in FY 2018

③ 개인 [사무 변호사, 법정 변호사 등 개인 변호사]
- 31명 활동
- 프로보노 활동 시간: 3650.20 시간 (16년도: 4050.4시간)
- 1명당 연평균 프로보노 활동 시간: 117.75시간(16년도: 112.5 시간)
- 35시간 또는 그 이상 충족: 20명 (16년도: 22명)
- 16 expect to meet the Target in FY2018 (down from 25 in FY2016)

다) 호주 프로보노센터의 법률 프로보노 제공

- 법률 지원(프로보노를 포함) 중개 기관임을 분명히 천명: 호주 프로보노센터는 법적 조언을 제공하거나 로펌과 연계되어 있지는 않음. 호주 프로보노센터는 프로보노 법률 서비스를 중개하고, 정책 개발과 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단체.
  : 프로보노 법률 서비스의 수요자를 “개인 / 지역법률센터, 호주 원주민과 토레스

11) Australian Pro Bono Center 타겟 참가 보고서 [2017] 참고

해협의 섬에 거주하는 토착민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 / 비영리 단체" 3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① 개인[12)]

공통적인 "법률 지원 서비스" 수혜 절차 소개(아래는 New South Wales의 안내 절차; 타 지역 선택시에도 안내 절차 유사)

① 지원 전 주의: 법률 프로보노 서비스는 최후의 수단: 다른 절차와 기관을 통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충분히 알아본 후 지원할 것

↓

② 국가기관에 문의: LawAccess(호주에서 웹사이트나 유선을 통해 법률 정보, 조언등과 같은 제공하는 국가 서비스), Legal Aid (호주 전역에 위치한 국가 법률 지원 사무소)

↓

③ 지역 법률 센터에 문의: Community Legal Centre(Legal Aid와는 구분된 지역 법률 지원 사무소, New South Wales 전역에서 찾아 볼 수 있음)

↓

④ 프로보노 제공 가능 전문 인력 추천 기관 or 단체에 문의(Pro Bono Referral Schemes & Organizatons)

1) 프로보노 중개 단체 : Justice Connect (공익 소송 및 법적 지원을 제공할 의사가 있는 변호사, 로펌을 중개; 지역 변호사 및 전문가들을 법 또는 전문 지식으로 지원)
2) NSW 지역 사무/법정 변호사 협회: Law Society of NSW/NSW Bar Association(지방변호사회와 같이 New South Wales 지방의 사무/법정 변호사회에서 제공하는 프로보노 제공 법조인 추천 프로그램 제시
3) 노숙자 법률 지원 단체: Homeless Persons' Legal Service

↓

⑤ 법적 지원을 얻을 수 있는 기타 방법

1) 직접 할 때: 직접 관련 법률 정보를 찾아서: 호주 프로보노센터 사이트 게시판에 게재된 법률 자조 정보를 활용
2) 로펌을 통해서: 승소했을 때만 소송비를 수수하는 로펌을 추천
3) 국가 제공 법률 서비스: 법정에서 제공하는 법률 지원서비스나 또는 무료 변호 서비스(국선 변호사와 비슷하나 국가가 고용하지 않는다는 점이 다름)

12) https://www.probonocentre.org.au/legal-help/individual/

② 지역 법률 센터(Community Legal Center), 호주 원주민과 토레스 해협의 섬에 거주하는 토착민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 (Aboriginal and Torres Strait Islander Legal Service), 호주 전역에 위치한 국가 법률 지원 사무소(Legal Aid)[13]

1) 호주 프로보노센터가 위와 같은 단체에 제공할 수 있는 프로보노 서비스의 종류
: 다양한 전문 지식과 역량이 필요한 문제를 참조할 수 있게 서비스 제공
: 연구 결과, 전문 지식, 변호사 선임 등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자원 제공
: 다른 단체와 프로젝트별로 또는 장기적으로 파트너십을 체결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기타 전문 지식, 훈련 프로그램, 자원 등을 제공

2) 지역법률센터와 프로보노 서비스 관련 통계(2014년도에 호주가 전국 지역 법률 센터 대상으로 시행한 보고서 근거)
: 전국 140개 센터 중 76개 센터(54.3%)에서 프로보노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있다고 응답
: 프로보노 지원은 총 72,046 시간 제공 됐고 이중 55,806시간이 변호사가 직접 클라이언트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
: 프로보노 지원은 주로 아래 3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짐
a. 프로보노 변호사가 센터와 연계된 고객에게 직접 법률 서비를 제공(80.3% / 57개 센터)
b. 프로보노 변호사가 센터에 법적 조언이나 지원을 제공(66.2% / 47개 센터)
c. 센터 변호사가 맡고 있는 클라이언트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지식을 전문 프로보노 변호사가 제공(50.7% or 36개 센터)

3) 각종 법률 지원 센터가 법률 프로보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경로
a. 호주 프로보노센터에서 제작한 "프로보노 파트너십과 모델: 효과적인 모델 구축을 위한 실제적인 가이드[14]" 참고
b. 호주 프로보노센터에 문의
c. 지역 프로보노 전문 인력 추천 기관 또는 단체에 문의
d. 자세한 조언 제공(프로보노 파트너십 또는 프로젝트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자원활동가를 구하는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 제공)

+ 자원활동가 중개 사이트[15](Social Justice Opportuinites)를 따로 개설해서 로스쿨 학생이 프로보노 자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중개함. 자원활동가가 필요한 단체는 공고를 무료로 내고 로스쿨 학생이 지원하는 형태. 페이스북 페이지와 트위터도 개설해서 홍보 및 접근성을 높임.

13) https://www.probonocentre.org.au/legal-help/clc-atsils-or-legal-aid/
14) https://probonocentre.org.au/whatworks/
15) https://www.sjopps.net.au/

③ 비영리 단체

: "지역 법률 센터(Community Legal Center), 호주 원주민과 토레스 해협의 섬에 거주하는 토착민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 (Aboriginal and Torres Strait Islander Legal Service), 호주 전역에 위치한 국가 법률 지원 사무소(Legal Aid)"에 대한 안내와 유사

④ 국가 및 지역 법률 단체를 위한 프로보노 활동 로펌 안내 사이트(National Law Firm Directory)[16]

1) 접근 권한
: 지역 법률 센터/ 프로보노 중개 단체/전국 소재 국가 법률 사무소/ 호주 원주민과 토레스 해협의 섬에 거주하는 토착민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 명부에 등록된 로펌 소속 변호사

2) 확인 가능한 내용
: 로펌 연락처/ 특화 분야/잠재적 문제 사항/사건 수임 기준/중개 절차/비용 및 환불 정책/법률 프로보노 제공 가능 분야

2) 프로보노 중개 단체 (Pro Bono Referral Schemes and Organization; PBROs)[17]

1. 프로보노 중개 단체에 대해서
- 호주에서는 지역별로, 주(州)별로 프로보노 중개 단체가 활성화 되어있음. 규모와 분야가 단체별로 다름
- 호주의 프로보노 중개 단체((ex. Justice Connect, JusticeNet SA and QPILCH) 는 일반적으로 멤버십 형태로 운영(Law Acess를 제외하고)
- 일반적으로 멤버십에 속한 단체들은 매년 소정의 금액을 단체에 냄.

2. 중개단체의 이점
- 로펌은 프로보노 중개기관에 속해있음으로써 사건을 수임할 기회가 생김.
- 법률 상담소를 운영하거나 법적 조력을 제공하는 중개 기관에서도 로펌이 이와 같은 활동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중개단체에 속한 로펌은 빅토리아 주, 퀸즈랜드 주, 뉴사우스웨일즈 주에서 아래와 같은 단체에서 활동함 [ex. 노숙자 법률 상담소, 난민 법률 상담소, 변호 조력 서비스, 노인 인권 법률 상담소 또는

16) https://directory.probonocentre.org.au/
17) https://www.probonocentre.org.au/whatworks/part-3/chap-9/

Justice Connect가 일시적으로 교외지역 거주민을 위한 간이 상담소를 운영에 함께하기도 함]

- 멤버십의 이점: 공동 연구, 정책 및 법 개정 운동, 프로보노 프로젝트를 함께 하거나 중개단체에 임시 파견을 보낼 수 있는 기회도 생김.
- 명부 등록 방식(Pro bono referral scheme)으로 운영하는 방법의 이점: 프로보노 서비스를 제공할 의사가 있는 소형 로펌에 특히 도움이 됨

3. 대표적인 중개 단체별 특징

[멤버십]

가. Justice Connect

▶ 형성 과정: 1)Justic Connect는 뉴사우스웨일즈 주의 중개기관(PILCH NSW)과 빅토리아 주의 중개기관(PILCH Victoria)이 합쳐져서 2013년 7월 1일에 설립, 2) 로펌들의 모임으로 시작했지만 규모가 커지면서 구성원도 다양해짐(ex. 대학교/지역법률단체/기업/법률 관련 공공기관, 지역 정부)

▶ 운영 방식:

1) 멤버, 주정부, 연방정부 등의 자금 지원 및 자선 기부[18]를 기반으로 서비스 제공
2) 멤버십에 속한 단체들은 매년 소정의 금액을 단체에 냄(로펌 같은 경우 로펌 소속 변호사 수에 따라 금액이 결정

▶ 활동분야:

1) 전문분야: 공익, 노인, 노숙인, 비영리 단체, 나홀로 소송(노동, 인권, 파산 관련) 조력, 주거용 건물 관련 분쟁
2) 활동: 무료 법률 지원, 온라인으로 비영리 단체를 위한 법적 지식 제공[19](기관내 부서로 비영리법 팀이 있는데 별도로 사이트를 만들어서 비영리 단체 운영과 관련된 법적 정보를 제공), 법개정 운동

▶ 멤버십(명부) 구성: Justice Connect 소속 변호사와 수천 명의 파트너 변호사(NSW와 빅토리아 주의 로펌 소속 변호사, 수백명의 법정변호사)

▶ 특징

1) 법조인에게 다양한 방식의 참여 권유
   - 온라인으로 비영리 단체를 위한 법적 지식 제공(기관내 부서로 비영리법 팀이 있는데 별도로 사이트를 만들어서 비영리 단체 운영과 관련된 법적 정보를 제공)- 인하우스 변호사에게 관련 정보 초안을 작성해달라든가 게재된 정보가 맞는지 검토해달라는 등의 방식으로 프로보노 활동에 참여할 것을 권유
   - 3~6개월 정도의 기간으로 임시파견 근무(secondee) 방식으로 동참할 것을 권유
   - 법정 변호사 협회(victorian bar) referral scheme에 등록
2) 디지털 혁신(Justice Connect의 핵심 전략)
   - 법적 자문을 빠르고 쉽게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도록
   - 가능한 분야에는 충분한 법적 정보 제공을 통해 혼자서도 충분히 법적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활용해 Justice Connect 소속 변호사와 효과적으로 매칭할 수 있도록
- 트렌드 분석을 통해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도록
- 온라인 아웃리치 전략을 통해 법적 지원을 받기 힘든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것

3) 비영리 또는 지역단체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오면 그 단체에서 법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지원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중개가 이루어짐[20]

나. Law Right [前 QPILCH(the Queensland Public Interest Law Clearing House)

▶ 형성 과정: 로펌들의 모임으로 시작했지만 규모가 커지면서 구성원도 다양해짐(ex. 대학교/지역 법률단체/기업 범무팀/지역 센터/법률 협회/ 법률 관련 공공기관, 정부부처)

▶ 운영 방식: 멤버십에 속한 단체들은 매년 소정의 금액을 단체에 냄(로펌 같은 경우 로펌 소속 변호사 수에 따라 금액이 결정)[21]

▶ 활동분야: 노숙자, 비영리단체, 난민, 나홀로 소송 등

▶ 특징: 로펌 및 기업 법무팀들과 주로 협업함/ 지역법률센터를 통한 프로보노 활동을 권장

나. 영국의 사례

1) LawWorks

영국에서는 1997년 사무변호사 공익법무그룹(the Solicitors Probono Group)이 설립되어 LawWorks라는 이름으로, 사무변호사들 간에 공익활동을 지원하고 운영하는 활동을 활발히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Law Works는 직접 일차적인 법률자문, 소송구조 업무를 하지는 않고 전국적으로 약 25,000명의 사무변호사, 중재인, 로스쿨 학생들이 공익활동 내지 관련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법률지원이 필요한 개인과 단체들을 연결

18) https://goo.gl/4HPc2d
19) https://www.nfplaw.org.au/
20) https://goo.gl/BErHEc
21) 회원회비(http://www.lawright.org.au/cms/page.asp?ID=61166)

로펌 회비	파트너 1인당 360 AUD
법무 법인(Incorporated Legal Practices) 회비	업무에 제한이 없는 사무변호사 1인당 360 AUD
법정 변호사 회비	
초임	명단에 없음
경력 2~3년	1인당 60 AUD
경력 4~5년	1인당 120 AUD
6년 이상	1인당 240AUD
정부 법률 기관 기업 법무팀	
정부 법률 기관 팀(per unit)	1팀 당 1210 AUD
기업 법무 팀	1팀 당 3630 AUD

해 주는 업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Law Works는 2012년도에 약 100여 개의 회원법률사무소(사무변호사) 구성원들과 사내 법무팀 소속 사무변호사들의 법률상담 자원봉사를 통하여 약 40,000명의 개인과 350여 개 지역 사회단체들에게 법률적 지원을 제공하였습니다.

LawWorks Clinics Network[22]는 LawWorks가 지원하는 전국적으로 무료 법률 네트워크로, 전화나 대면상담, 스카이프상담 등으로 무료법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 iProbono

iProbono는 모든 비영리기관 및 사회적기업과 협력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iProbono는 5만 명이 넘는 변호사와 1,200개의 비영리단체으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구축했으며, 29개국에서 630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완료되었습니다. iProbono는 법률지원을 필요로 하는 비영리기관과 협력하여 프로젝트 범위를 설정하고 팀을 구성하여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법률지원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23]

3) PILnet

PILnet은 자선 단체 및 NGO가 무료 법률 지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전 세계 6개 사무소는 프로보노로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변호사와 NGO 간의 중개 역할을 합니다. PILnet은 자선 단체, NGO, 비영리단체, 사회적 기업 및 지역단체를 지원하고, 개인에 대한 법률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프로보노 지원을 요청하는 모든 신규 NGO 파트너는 초기심사 과정을 거쳐 프로보노 활동의 필요성에 관한 상담을 받습니다.[24]

다. 미국의 사례

미국에서는 변호사의 직업윤리적인 책임이 사회적으로 요구됨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할 여유가 없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해 보수를 받지 않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보노(pro bono) 활동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변호사협회 윤리장전(American Bar

22) 해당 지역 클리닉을 검색 할 웹 사이트: www.lawworks.org.uk/clinics
23) 신청 경로: www.i-probono.com/ contact@i-probono.com
24) 신청 경로: www.pilnet.org / globalprobono@pilnet.org

Association Model Rule 6.1)에 따르면, “모든 변호사는 수임료를 지불할 수 없는 이들에게 법률적 지원을 할 윤리적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변호사들은 매년 적어도 50시간의 프로보노 활동을 지원함을 추천합니다. 비록 미국변호사협회 윤리장전이 강제적이거나 구속력 있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현재 미국 50개 주에서 위 변호사 윤리장전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1) Pro Bono Institute (PBI)

미국의 프로보노 중개 및 지원 기관 중에서 대표적 기관은 프로보노 인스티튜트(Pro Bono Institute, PBI)입니다. PBI는 1996년 Washington DC에 설립된 비영리 기관이며 대형 로펌, 기업 사내 법무 팀 및 공익단체들과 협력하여 사회적 취약계층과 비영리 단체를 위하여 프로보노 활동을 통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법조계의 프로보노 증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PBI는 변호사수 50명 이상의 대형로펌을 대상으로 멤버쉽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변호사 수에 따라 $1,500~$2,000의 연회비를 차등 설정하며 컨설팅 서비스, 교육, 자료, 보고서, 네트워킹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현재 약 120여 개의 로펌이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현재 PBI는 직접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지는 않고, 사법접근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기관을 지원, 안내, 장려하는 프로젝트들을 선별하여 상호 시너지를 촉진시키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로펌 프로보노 프로젝트(Law Firm Pro Bono Project), 기업 프로보노 프로젝트(Corporate Pro Bono Project), 글로벌 프로보노 프로젝트(Global Pro Bono Project), 공익단체지원(Public Interest Project), 그리고 은퇴 법조인을 위한 프로그램(Second Acts Project) 등이 있습니다.

가) 로펌 프로보노 사업 (Law Firm Pro Bono Challenge)

PBI는 미국 및 전 세계 주요 로펌들의 프로보노 문화 및 활동을 지원하고 촉진하기 위해 조직된 글로벌 프로젝트로 ‘Law Firm Pro Bono Challenge’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형 로펌에 대한 프로보노 목표 기준을 설정한 것으로, 현재 미국 내 140여 개의 로펌이 이를 이행하고자 서명한 상태이며, 로펌들은 1년 단위로 프로보노 프로젝트를 이행하고, 매년 PBI에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PBI는 로펌에 자문 서비스, 프로보노 관련 정보 제공, 교육 프로그램 제공, 네트워킹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수 50명 이상의 대형 로펌 이어야 가입 자격이 생기며, 가입한 로펌은 연간 비용 청구시간(total billable hours)의 3~5%를 공익활동에 써야 합니다.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여 효율적인 프로보노 활동을 추구하게 하고, 이행결과 측정을 통해 로펌의 책임감을 고취시킨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나) 기업 프로보노 사업 (Corporate Pro Bono Challenge SM)

2006년 미국 및 전 세계 사내 법무팀의 프로보노 활동을 지원, 촉진하기 위해 PBI와 미국사내변호사협회(Association of Corporate Counsel, ACC)의 글로벌 파트너쉽 프로젝트입니다. 사내 변호사의 프로보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작된 사업으로, 이 사업에 참여하는 회사의 사내 변호사와 법무 팀을 무료로 관련 정보와 가이드라인, 기술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2) Equal Justice Works[25)]

미국의 Equal Justice Works는 공익변호 활동 및 공익변호사 중개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비리단체로 로펌, 기업, 변호사협회 등으로부터 후원을 받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Equal Justice Works는 공익단체에는 임금지급 부담을 덜어 주고 변호사에게는 경제적 지원을 보장하여 소속된 공익변호사들이 공익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Equal Justice Works에서 지원한 변호사는 137명에 달하고, 2010년 42명, 2011년 45명, 2012년 50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Equal Justice Works 펠로우 기금은 새로운 변호사들은 2년 과정의 펠로우쉽 제공을 통해 수천 명의 삶에 영향을 주고 법률구조를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공동체에 봉사하는 새로운 법률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25) Equal Justice Works 홈페이지(http://www.equaljusticeworks.org) 참조

4. 프로보노지원센터를 통한 변호사 공익활동 활성화 모색

가. 프로보노 중개 코디네이터

프로보노 활동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변호사와 공익단체간 다양한 프로젝트와 파트너십을 통해 여러 변호사들과 단체들의 참가를 유도하여야 합니다. 또한 프로젝트와 파트너십·공익활동 진행 중에도 수시로 변호사와 공익단체 간에 원활하게 활동이 진행되는지 확인하고 양 쪽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중간자 역할을 충실히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활동을 전담하는 프로보노 중개 코디네이터가 센터에 상근하면서 이러한 활동을 하게 되면 프로보노지원센터를 통한 공익활동은 대폭 활성화될 것입니다.

나. 네트워크 및 정보제공

공익활동의 경험이 없는 변호사도, 변호사와 활동경험이 미미한 공익단체도 서로 어떤 활동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막막하여 법률과 관련된 공익활동을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프로보노지원센터가 변호사와 공익단체 간에, 변호사들 간에, 공익단체들 간에 네트워크로 연결시켜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고 서로의 수요를 파악하여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공익활동에 관한 유용한 정보들을 서로 간에 유통되도록 하여 정보의 편재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해준다면 변호사들도 공익단체들도 한결 편리하게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 영역별 법률매뉴얼 제작 및 교육

유능한 변호사들도 모든 분야에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공익활동 영역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법률지식·분야의 전문지식을 일정 정도 습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영역별로 활동하는 공익단체들도 분야에 관한 활동은 전문가이지만, 그 분야에 관한 법률지식은 부족합니다. 영역별로 필요로 하는 법률매뉴얼을 제작하여 제공하고, 그에 관한 교육을 병행한다면 변호사의 공익활동 참여도 한결 수월해지고, 공익단체들의 활동에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 영역별 변호사단 구성

변호사가 공익활동을 개인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정보의 한계·전문성의 한계 등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역별로 그 분야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법학교수 등이 함께 논의하고 활동하는 변호사단이 꾸려지게 되면 해당 분야에서 훨씬 효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장애인법연구회(사단법인)는 법률실무가(판사, 검사, 변호사), 법대 교수 등 70여 명의 회원이 모여 장애인 인권에 관한 공익소송·법률 연구와 공익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지난 2010년 첫 모임을 시작으로 매월 세미나를 진행하여 현재까지 60차례 넘는 세미나를 진행하였고, 장애인의 참정권·이동권 등 다양한 영역에서 공익소송을 수행하였으며, 유엔장애인권리협약 한국정부 심의 참관, 법원 판사·직원 대상 장애인식개선 교육, 장애인법총서 발간, 장애인의 사법서비스 지원 방안 등 연구, 장애인차별금지법 해설서 집필 등의 사업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마. 변협 및 지방변호사회마다 프로보노지원센터 설치

현재 변협과 지방회 통틀어서 서울지방변호사회에만 프로보노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들의 공익활동이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변협과 각 지방변호사회별로 프로보노지원센터가 설치될 필요가 있습니다. 변협 산하 프로보노지원센터가 중앙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로서, 전국 차원의 네트워크 형성, 정보제공, 법률매뉴얼 제작, 지역의 프로보노지원센터 지원 등의 역할을 하고 지방회마다 설치된 프로보노지원센터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지역별로 공익단체와 변호사간의 중개·지원 역할을 수행한다면 변호사의 공익활동은 놀라울 만큼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 공직임용 및 공공서비스 계약 체결시 가산점 부여

영연방에 속한 국가들에서는 국가기관이 법률서비스를 구매(이용)할 때 부처들이 활용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 제공업체 목록을 만들었고, 이러한 법률서비스 제공업체 목록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법무부가 내세운 조건으로 충분한 프로보노 활동 경력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적인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공익적 활동의 경력을 요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우리의 경우에도 판·검사 임용, 정부부처의 공직임용시에, 혹은 공공기관과의 법률서비스 계약 체결시에 이와 같은 프로보노 활동경력을 요구하게 된다면 변호사들의 공익활동이 보다 진작될 수 있습니다.

사. 공익변호사 양성

2010년경 이후로 변호사들의 공익활동이 보다 활성화된 것은 다른 이유도 있겠으나, 주로는 공감·어필·희망법 등의 공익전담변호사단체의 증가, 로펌 내 공익전담변호사 수의 증가, 공익변호사 수의 증가에 기인합니다. 변호사 전반의 공익활동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익전담변호사들의 숫자가 좀 더 늘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 Equal Justice Works와 같은 공익단체와 대형로펌에서 공익변호사를 재정적으로 지원하여 공익변호사를 양성하고 있고, 정부의 법률구조기금의 상당액수를 민간 공익변호사단체를 위해 쓰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 일변련 및 지방회에서 전국의 변호사들로부터 매달 특별회비를 걷어 히마와리(해바라기) 기금을 조성하여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공익활동·변호사 과소 지역에서의 법률구조활동하는 공익법사무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5. 나가며

전문가들의 공익활동을 통칭하는 프로보노(Pro Bono)는 라틴어의 '공공선을 위하여(Pro Bono Publico)'라는 단어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이때 'Pro'는 영어의 'in favor(~을 위하여, 찬성하여)'를 의미하고, 'bono'는 'good(좋은, 옳은, 정직한, 건강한)'을 뜻하며, 'publico'는 'public(공공의)'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뜻을 가진 프로보노는 법률가들이 무상으로 법률지원을 하는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프로보노는 결국 공익활동을 하는 나와 공익활동의 지원대상인 당신, 우리 모두에게 옳을 뿐 아니라 좋은 일이고, 그렇기에 건강한 사회를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토론문1]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프로보노지원센터의 역할

송상교 변호사(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1. 염형국 프로보노지원센터장은 변호사의 공익활동이 행복한 삶을 위한 것이라고 과감히 말하고 있다.

염 변호사의 경험에 따르면, 진로를 고민하던 한 젊은 변호사를 아름다운 재단으로 이끌고 15년째 공익변호사로 일하도록 하였으며 그 결과 현재 이 사회에서 크게 신뢰받는 공익변호사로 만드는 데 있어 그 초기에 중요한 장면이 있었다. 공익변호사를 꿈꾸는 젊은 변호사에게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통로가 되어준 박원순 변호사처럼 말이다. 공익변호사가 되거나 적어도 변호사로서의 공익적 활동을 통해 의미를 찾고자 하는 변호사들이 도처에 있고 지금도 로스쿨에서 그러한 꿈을 가꾸는 예비 법조인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돈이 없거나 정보가 없어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 공익이슈를 제기하고자 하나 변호사를 찾지 못하는 단체도 여전히 많다. 이 수많은 수요들이 제대로 접점을 찾지 못할 때, 사회의 불신은 고스란히 모든 변호사의 몫이 된다.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시작한 프로보노지원센터의 필요성과 과제가 여기 있다고 본다.

2.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의 필요성과 역할

(1) 발표문은 변호사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조건으로 1) 공익활동을 하고자 하는 변호사들이 손쉽게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을 찾을 수 있고, 2) 변호사의 법률지원을 필요로 하는 공익단체도 수월하게 자신을 지원해줄 변호사를 찾을 수 있어야 하고, 3) 해당 분야를 처음 접하는 변호사들을 위해서 관련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교육받을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는 매뉴얼이 마련되어야 하며, 4) 공익 영역에서의 정보인프라를 통한 정보공유가 원활히 이루어져야 하고,

5) 선배변호사와 후배변호사와의 협업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쓰면서 이러한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변호사 공익활동중개센터의 필요 때문에 프로보노 지원센터의 설립이 요청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2) '프로보노지원센터'라는 작명 자체가 변호사회 회원들의 다양한 프로보노 활동을 지원하는 단위, 즉 변호사 공익활동 중개센터를 목적으로 하였음을 잘 보여준다. 프로보노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도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는 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의 인권 보호와 공익 실현을 위해 열정적으로 프로보노 활동을 하는 변호사 및 활동가, 공익단체를 지원·양성하고, 이들 사이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프로보노 허브 기관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설립된 서울지방변호사회 산하 공익활동 사업기구입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3. 프로보노지원센터 활동과 평가

(1) 프로보노지원센터는 2016년 4월 개소 후 불과 2년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센터 사업의 일상적 틀을 잘 지어 올린 것으로 보인다. 프로보노지원센터가 어떤 것을 하고자 하는지 누구나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도록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업 틀이 형성되어 있다. 홈페이지나 센터의 사업을 통해서 드러나는 주요 틀은 ① 변호사 공익활동의 지원(연구사업비 지원, 전문가 초청 세미나), ② 중개 또는 연결(프로보노 라운드테이블, 프로보노 온라인 중개활동), ③ 공익활동 역량강화(법률지원 매뉴얼, 전문가초청세미나, 공익활동 역량강화 워크숍) ④ 프로보노 봉사활동, ⑤ 프로보노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파악된다.

(2) 직접적으로 일반적 또는 특정 영역의 공익·인권 활동을 전담하는 기관 내지 단체들은 꽤 있지만 이처럼 공익활동의 지원, 중개를 목표로 하는 기관은 매우 희소하며 그 점에서 센터의 의미가 크다. 프로보노지원센터가 시작한 활동들은 대체로 변호사의 공익활동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3) 프로보노지원센터의 활동 중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연결(중개)과 역량강화 활동인

것 같다. '연결'을 목표로 진행되어 온 '프로보노 라운드테이블'은 구체적인 공익활동 영역별로 공익단체, 기관과 변호사가 한 자리에 모여 현황을 공유하고 연계 방안을 고민한다는 면에서 프로보노지원센터가 가진 위상에 가장 적합한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공익이슈에 대한 변호사와 단체 등의 중개기능은 다른 곳에서 수행하지 못하는 귀중한 역할로서 의미가 크고, 실제로 행사들은 좋은 평가를 받았다.

(4) '법률지원 매뉴얼'은 프로보노지원센터가 가진 확장성과 네트워킹의 가능성을 잘 보여주었다. 기존에 발간된 홈리스, 아동학대사건, 공공후견인 법률지원 매뉴얼들은 각각 꽤 호응을 얻어 추가 인쇄를 하였다. 센터 홈페이지에 업로드된 자료 중 이들 매뉴얼의 조회수는 대략 1,000회 안팎으로 활용되어 다른 자료들보다 활용이 크게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매뉴얼의 수요는 구체적인 공익 영역에서 현장에서 활동하는 공익변호사의 구체적 경험과 실질적 노하우가 녹아 있어 실무적인 도움이 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계속적으로 주제를 이어나간다면 향후에도 훌륭한 센터의 사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역량강화워크숍' 역시 공익활동 역량강화에 도움이 되고 있다.

(5) '공익·인권분야 연구활동 지원사업'은 서울변회 변호사들이 공익·인권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개선방안 연구, 판례 연구 등을 위한 지원 신청을 하고 이를 심사하여 연구비를 지원하고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변호사 공익활동의 질적 심화를 위한 좋은 계기가 되고 있다. 해마다 연구활동 내역이 쌓여간다면 그 활용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연구지원 사업의 성격상 일정한 수의 제한된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일정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므로, 좀 더 많은 변호사 회원들의 연구활동을 지원하지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한계이다. 변호사들의 연구활동 중에는 반드시 많은 비용이 필요치 않은 것도 있을 수 있는 바, 변호사들이 소액이라도 지급받아 일정한 성과를 보고할 수 있는 작은 규모의 연구활동에 대한 지원 방식도 고려할 만한다.

(6) 현재 프로보노지원센터의 인적 구성이 소장 및 2명의 상근자로 구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센터의 핵심적 과제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것이다. 봉사활동(프로보노 사랑나눔 프로젝트)의 경우 프로보노지원센터의 주요 사업으로

계속 유지할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물론 소외계층 등에 대한 봉사활동이 일반적 의미의 '프로보노' 활동을 내용을 이루는 것은 사실이나, 변호사의 공익법률지원활동의 지원·연결이라는 프로보노지원센터의 역할과는 직접 잇닿아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변호사회 차원에서 회원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4. 프로보노지원센터를 통한 프로보노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

(1) 발표문은 '프로보노지원센터를 통한 변호사 공익활동 활성화 모색' 방안으로 프로보노 중개 코디네이터, 네트워크 및 정보제공, 영역별 법률매뉴얼 제작 및 교육, 영역별 변호사단 구성, 변협 및 지방변호사회마다 프로보노지원센터 설치, 공직임용 및 공공서비스 계약 체결 시 가산점 부여, 공익변호사 양성을 제안하고 있다. 모두 필요하고 시급한 제안이다. 몇 가지 첨언한다.

(2) 회원 변호사들의 프로보노 참여 실질화

발표문이 소개한 '호주 프로보노 지원센터' 등 해외의 프로보노 중개기관 사례에서 눈에 띄는 것은 호주의 '타겟'과 같은 중개 방식과 중개기관의 조직 형태이다. 발표문에 따르면 '타겟'은 변호사 한 명당 1년 동안 최소 35시간 이상 프로보노 서비스 제공을 자발적으로 서명한 변호사 풀이다. 공익을 전담하는 공익전담변호사는 물론 이를 넘어 광범위한 일반 변호사와 로펌들을 프로보노로 조직하고, 이들을 지역의 개인 및 공익단체와 연결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중개기관은 외국의 경우 변호사회가 아닌 별개의 민간단체이며 이들은 회원의 멤버십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프로보노지원센터의 경우 서울변회에 소속된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이 변호사들을 어떻게 프로보노지원센터를 매개로 조직하여 개인 및 공익단체와 중개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의 검토가 필요하다. 프로보노지원센터의 발전방향은 이처럼 좀 더 광범위한 범위에서 구체적인 변호사와 개인, 단체의 중개기능을 실질화하는 것에 있지 않을까 한다. '공익변호사의 지원·중개'와 '변호사 공익활동의 지원·중개'는 다른 방식으로 기획되고 조정될 필요가 있다. 특히 조직화되어 있지 않은 일반

변호사들의 공익활동 지원·중개는 보다 세심한 기획이 필요할 것이다. 기존의 서울시 마을변호사 제도 등을 센터가 적극 활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발표문에서는 일반적인 중개 프로그램으로 '프로보노 온라인 중개활동'을 소개하고 있다. 이는 공익활동을 하고자 하는 변호사와 법률지원을 필요로 하는 단체를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중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러한 온라인 중개활동이 충분히 활성화된다면 이를 통하여 그러한 실질적 중개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온라인 중개 역시 기본적으로 별도의 담당자가 오프라인을 통해 변호사, 단체 쪽의 요청을 확인하고 의견을 주고받으며 조율해야 할 사항이 많을 것이다. 프로보노지원센터의 적극적인 중개가 이루어지 않는다면 온라인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프로보노 온라인 중개가 현재 어느 정도 활용되고 있는지 궁금하다.

(3) 프로보노지원센터의 중개 전문가 상근

외국의 사례에서와 같이 다수의 변호사를 조직하여 단체와 구체적으로 연결하는 활동방식을 운영하려면 이를 위한 상근 역량이 별도로 필요할 것이다. 발표문이 지적하였듯이 이를 위해서는 별도의 중개 전문가가 센터에 있어야 할 것이다. 프로보노 중개 코디네이터의 상과 역할에 대한 구체적 검토가 필요할 것이고, 이를 위한 예산도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4) 공익변호사 양성

변호사 공익활동은 물론 모든 변호사가 할 수 있지만, 발표문이 지적한 것처럼 프로노 활동의 증대는 기본적으로 공익전담변호사의 증가에 힘입은 바 크다. 2016년 출범 시 프로보노지원센터는 '전업 공익변호사 매년 2~3명을 양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웠고(문화일보 2016. 4. 19.자 "전업 공익변호사 매년 2~3명 양성"), 센터 홈페이지에는 '신규 공익변호사 자립지원'이 주요 활동으로 언급되어 있다. 이러한 전업 공익변호사를 매년 2~3명 안정적으로 양성해낼 수 있다면 그 의미가 적지 않을 것이다. 현재 서울변회 프로보노지원센터 차원에서 공익변호사 양성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평가가 필요하다. 공익변호사 양성은 기본적으로 비용이 필요하고, 안정적인 양성 계획과 사후관리가 이어져야 한다.

(5) 대형 로펌의 실질적 참여

프로보노 중개기능의 실질화와 이를 위한 전문가 확충, 공익변호사 양성 등은 모두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계획이 수반되어야 하며 특히 재정이 필요한 일이다. 이 부분에 대해 변호사회가 적극적 인식을 가지고 보다 많은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명목으로 일정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다른 한편 법무법인, 특히 대형 법인의 프로보노 참여 및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센터 설립 초기 김앤장, 태평양, 광장, 세종, 율촌, 화우, 바른 등 대형 법률사무소들이 함께 공익활동을 지원한다는 보도가 있었던바, 이후 대형법인 자체의 공익법인 설립 또는 공익변호사 채용 외에 법인의 프로보노센터 재정 지원 내지 구성원의 활동 참여 현황이 어떤지 궁금하다.

[토론문2] 프로보노지원센터의 발전안

박경신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직업으로서의 공익법 활동:

공익법 활동은 변호사의 직업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다음의 5가지 모듈로 나눌 수 있다.

① 영리직장을 통한 공익법 활동

가. **중소사무소를 개업**하여 직장을 통해서 공익소송을 처리함.

나. **대형로펌의 공익전담변호사**로 일하면서 직장을 통해서 공익소송을 처리함.

다. 대형로펌이나 중소사무소에서 일하면서 **파트타임으로 공익소송**을 맡음.

② 비영리직장을 통한 공익법 활동

가. 정부기관, 비영리단체 내에 존재하는 **법률 파트**에 들어가서 공익소송을 처리함.

나. 비영리단체 및 노동단체 내에서 **활동가/변호사**로 일하면서 법률지식을 이용하여 다양한 공익법 활동을 하게 됨.

위의 5가지 모듈을 이용하여 공익변호사들은 다양한 공익활동을 수행하게 되는데 각 모듈과 공익활동의 종류는 독립적이긴 하지만 아래 밝히듯이 상관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대형로펌에서 일하게 되면 아무래도 기업 측의 이해관계에 위협적인 소송을 다루기는 힘들어진다. 중소사무소는 자유롭게 공익소송을 맡을 수 있지만 자원이 한정되어 있어 대형공익소송이나 다자소송을 스스로 하기가 어려워진다. 로펌에서 파트타임으로 공익소송을 맡게 되면 여러 가지 시간적 제약과 이해관계의 제약이 발생한다. 정부기관이나 비영리단체의 법률 파트에서는 한정된 종류의 활동만을 하게 된다. 아마도 가장 선호되는 것은 비영리단체에서 폭넓은 공익활동을 하는 것일 터인데 이와 같은 단체가 많지 않고 자원이 한정되어 있다.

프로보노지원센터의 위상: 프로보노활동은 여러 가지 직업으로서의 공익법 활동 중에서 아래의 2-가 유형이 변호사들에게 공익활동을 중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공익활동의 정의는 까다롭다. 아래는 소송에 한하여 공익활동을 정의해본다.

(1) 소송의 내용을 기준으로 한 정의: 인권소송(경찰폭력 등), 소비자권리소송(제조물 책임 포함), 소액투자자소송, 납세자소송, 민권소송(차별 및 표현의 자유 침해), 장애인소송, 정부혜택소송 등은 보편적으로 중요한 권리의 보호를 내용으로 한다.

(2) 변호사 보수를 기준으로 한 정의: 변호사들의 보수가 시장가격보다 훨씬 낮게 책정되거나 아예 없는 경우를 미국에서는 프로보노(pro bono)활동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할 경우 IPO가 될지도 모르는 스타트업을 자문하는 것도 프로보노에 포함된다.

***1965년 연방정부 Legal Service Program 총장: "변호사들은 사회에 기여하기 위한 운동가(activists)가 되어야 한다. 이 정부프로그램은 변호사들이 사람들을 가난의 질곡에서 해방시키고 빈곤의 원인과 결과를 퇴치하기 위해 법의 힘을 이용하기 위한 도구를 민주적 절차 내에서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18쪽, a Short History of Poverty Lawyers in United States) --〉 **공익활동은 역사적 맥락을 필요로 하는가? 약자보호가 목적인가? 그렇다면 약자는 누구인가? 공익활동과 프로보노는 다른 것인가?**

공익활동의 종류는 다양하다:[1)]

1980년도 로스앤젤레스. 낸시 민티(Nancy Mintie)는 민권운동과 반전운동의 질풍노도와 같은 나날들로 학창시절을 보내고 70년대 후반 UCLA로스쿨을 졸업하면서, 심한 무기력증에 시달리고 있었다. 젊은 날의 이상(理想)들은 아직도 마음 속에서 빛나고 있었지만 정작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보여주지 않았다. 그녀는 가장 쉬운 곳에서부터 길을 찾아 나서기로 하였다. 자신이 가장 잘 아는 곳에서부터 - 대학교 때 자원봉사하던 노숙자 급식소. 노숙자 급식소에는 노숙자들뿐 아니라 빈민촌의 빈민들도 양식이 떨어지면 노숙자 급

1) 박경신, "미국의 공익인권소송", 한인섭 편집, 〈한국의 공익인권소송〉

식소를 찾곤 하였는데 이들도 낸시의 법률상담을 받게 되었다. 그중 몇몇 사람들은 자신들의 주거환경이 너무 열악하여 쥐, 곤충들의 습격으로 질병에 시달리게 되는 것은 물론 생활이 엉망이 되어버려 재기의 기회도 없는 삶을 살고 있다고 호소하였다. 쥐에게 물려 상처를 입은 어린 아이를 변론하여 민사소송이 작은 성공을 거두자 주변의 빈민촌 사람들이 낸시에게 몰려들었다.

낸시는 노상변론이나 스토어프론트사무소를 통한 ① **개별적인 법률구조소송**은 세입자들에게 금전적인 보상만을 가져다 줄 뿐 세입자들의 주거환경은 엉망으로 남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 물론, 그들의 생활도. 세입자들이 받게 되는 금전적 보상은 자신의 주거환경이나 자신이 살았던 거주지에 찾아오는 다른 세입자들의 주거환경의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찾아오는 세입자들마다 일일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었다. 결국, 장기적인 해결책을 위해서는 공중위생 및 건물안전을 책임지는 정부기관의 지속적인 단속을 통한 강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낸시는 찾아오는 세입자들의 민원을 모아 정부기관에 알리고 단속을 독려하고 요구하는 일종의 ② **대정부로비(advocacy)**를 하기 시작하였다. 이들 세입자들은 여러 집회나 시위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건물주들에 의한 소송을 당하기도 하였고 낸시는 이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건물주소송을 방어하거나 건물주를 상대로 SLAPP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대정부로비는 세입자들에 대한 ③ **교육과 조직(education & organizing)** 없이는 불가능하였다. 낸시는 결국 세입자들에게 직접 칼자루를 쥐어주는 운동이 필요하다고 결정하였다. 낸시는 수백 명의 세입자들을 집단으로 모아서 ③ **집단적인 구제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하였고 이는 미국민사소송법 상으로도 **집단소송(class action)**의 형태를 띠기도 하였다. 낸시는 세입자들에게 자신들의 권리를 알리고 집단소송에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조직가들을 고용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열악한 사회보장예산은 원활한 단속활동을 정부부처에 허락하지 않았다. 집단소송은 추상적으로 정의되는 원고들의 법익을 모두 변호할 수 있게 되어 사회적인 의미가 개별구제소송과는 차이가 달랐다. 그리고 사회개혁의 입장에 유리한 판례나 선례를 세운다는 취지에서 법적인 의미가 큰 소송도 제기하게 되었는데 이를 ④ **"임팩트소송(impact litigation)"**이라고 부른다.

이때부터 낸시가 제기하는 소송들의 소요기간도 훨씬 길어지게 되었고 낸시가 상대하는 피고 측 로펌들의 규모도 훨씬 커지게 되었다. 집단소송이나 임팩트소송은 물론 한 명의 변호사가 하기에는 힘든 일이었고 낸시는 더 소송을 집중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로펌들이 필요하였다. 낸시는 건물 별로 소송을 기획하여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로펌들의 도움을

요청하였다. 지역사회에 무언가 도움을 주고 싶었지만 로펌의 운영에 해가 되지 않는 집중적으로 인력을 투입하여 파급력있는 효과를 낼 수 있는 소송거리를 찾고 있던 로펌들은 집단소송이나 임팩트소송을 낸시의 지휘하에 수행하게 되었다. 낸시는 이렇게 공익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는 로펌들에게 적절한 소송을 기획하며 ⑤ **중개(referral)**해주기도 하였다.

낸시는 집단소송을 통해 합의금 백만 불(한화 약 10억)이 넘는 소송들을 승리하거나 합의로 이끌기 시작하였고, 또 악덕건물주에 대해서는 실제 손해액을 초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을 선고받기 시작하였다.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은 건물주들에게 커다란 부담이 되었다. 건물주들은 더 이상의 소송을 막기 위해 건물보수를 하기 시작하였다. 건물보수를 할 돈이 없어 건물을 내놓거나 파산을 신청하는 건물주들도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세입자들은 채권자들이 되면서 건물주에게 건물보수를 강제하거나 때로는 건물의 지분 일부를 넘겨받게 되면 이를 담보로 돈을 빌려 건물보수를 할 수 있었다. 세입자들이 칼자루를 쥐게 된 것이다. 그러나 많은 경우, 건물들에는 선순위 은행담보가 잡혀있어 건물이 세입자들에게 넘어오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게 넘어가기도 하였고, 건물보수를 하기 위해 돈을 빌리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실제로 세입자들이 살고 있는 건물의 보수를 위해서는 은행들의 관심이 필요하였고, 낸시와 낸시의 동료들은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진 은행들의 도움을 얻어 ⑥ **경제개발(economic development)** 사업을 시작하였다. 우리나라로 치면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재개발에 해당하는 것인데 미국에서는 비영리단체들이 많이 주도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재개발의 결과물로 노인전용아파트나 저소득층전용아파트 등이 건설된다.

또 낸시는 ⑦ **입법활동(legislative advocacy)**에도 적극적으로 가담하게 된다. 예를 들어 주법이 정한 최소주거기준을 구체화하는 작업 등이다.

낸시 민티는 거주문제에 관한 한 개별구조소송에서 시작하여 대정부로비, 집단구조소송, 임팩트소송, 경제개발, 조직및교육사업, 입법활동에 이르기까지 모든 활동을 담당하게 되었고 낸시는 각 활동이 거주문제의 영구적 해결을 위해서는 모두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낸시 민티가 세운 단체는 10년 안에 거주문제에 있어서 로스앤젤레스 지역을 대표하는 공익법률단체가 되었고 많은 재단들이 낸시 민티의 단체에 기부를 하기 시작하여 지금은 낸시 민티가 자기 생애에서 가장 보람있어 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바로, 10년 전 자신처럼 로스쿨을 갓 졸업한 변호사들에게 공익법률활동을 할 수 있는 직장을 제공하는 일이다. 전화기 하나와, 책상 하나와, 그리고 컴퓨터 한 대와 함께.

프로보노지원센터의 개선안:

가. 프로보노중개 코디네이터 - 변호사들의 능력, 소속로펌의 상황, 의뢰인 측이 겪는 문제의 사회성까지 모두 이해하는 경력 있는 사람이 필요할 듯.

나. 네트워크 및 정보제공 - 목표가 명확해야 할 듯. (나)와 (다)를 목표로 명확하게.

다. 영역별 법률매뉴얼 제작 및 교육 - 프로보노지원센터가 단독으로 하기 어려운 일일 듯. 변협, 민변 등의 자료를 이용하거나 프로보노지원센터에 많이 들어오는 사건들에 대해 지엽적인 매뉴얼을 만드는 것은 어떨까? 또는 프로보노지원센터가 사건유형들을 집중하는 것은 어떨까?

라. 영역별 변호사단 구성 -

마. 변협 및 지방변호사회마다 프로보노지원센터 설치 - 찬성

바. 공직임용 및 공공서비스 계약 체결 시 가산점 부여 - 영국의 사례를 살펴볼 필요. 항상 알고리즘을 통한 평가는 항상 남용의 가능성이 있음.

사. 공익변호사 양성 - 공익변호사 숫자의 증가는 로스쿨 개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 양성과정이 폐쇄되고 지난할수록 공익활동에 대한 동기는 높지 않음. 변호사 양성제도를 얼마나 간소화하고 개방화하는가는 앞으로도 공익변호사 양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 양적인 증가가 질적 심화로 안착되기 위해서는 변호사 숫자제한을 철폐할 필요가 있음. 현재는 변호사들이 스스로 변호사 숫자제한이라는 제도에 힘입어 직역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임.

[주제2]

로펌 프로보노 활성화

발제 이희숙 변호사(재단법인 동천)
토론 강정은 변호사(사단법인 두루)
박중원 변호사(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

[발제문] 로펌 프로보노 현황과 발전 방향

이희숙 변호사(재단법인 동천)

Ⅰ. 들어가며

2000년대 이후 로펌은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고, 2018년 기준 법무법인의 개수는 1,070여 개, 구성원 및 소속변호사 수는 10,729명에 이른다. 늘어난 로펌의 숫자만큼이나 각 영역별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 로펌의 공익활동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대형로펌을 중심으로 프로보노 조직 체계를 갖추고 있고, 프로보노를 로펌의 경쟁력 중 하나로 삼고 있다. 국내외 언론도 이러한 로펌의 공익활동에 주목하고 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영국의 후스후리걸이 선정한 사회공헌 분야 '올해의 최우수 공익활동 로펌'에 꼽혔고,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올해 아메리칸 로이어잡지가 주최한 '2018 아시아 리걸 어워즈'에서 한국 지역 '올해의 프로보노 분야 선도로펌'으로 선정되었다. 올해 처음 개최된 머니투데이 더엘(The L)의 제1회 법무대상 시상에서 법무법인 세종과 법무법인 지평이 공익상을 수상했다. 그 외에도 많은 로펌들이 공익활동으로 다양한 업적을 쌓고 있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2000년대 초·중반 일부 소수 로펌에서 프로보노 체계를 마련하기 시작하였는데 최근 몇 년 사이 로펌 프로보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더욱 확산되고 체계적인 프로보노 시스템을 갖춘 로펌 수도 늘어났다. 기업 CSR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가, 법률시장 개방에 따른 영미권 로펌들의 프로보노 스탠다드 확산, 법조계 내부에서 로펌의 프로보노를 촉구하는 여러 노력들이 일정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재단법인 동천도 로펌 프로보노 활성화를 미션 중 하나로 삼고 수년 전부터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2년도에는 '로펌프로보노 현황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여 미국 로펌들의 프로보노 현황을 공유했고, 2014년도에는 '공익법운동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공익세미나를 주최하여 로펌 프로보노와 공익법운동, 한국로펌의 공익활동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4년

이 지난 오늘 날, 그 사이 로펌 프로보노 현황은 기대 이상의 빠른 속도로 변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로펌 프로보노의 변화와 현황에 대하여 살펴보고, 로펌 프로보노의 쟁점 및 향후 더욱 성장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Ⅱ. 로펌 프로보노 의의와 현황

1. 로펌 프로보노 의의

통상 프로보노는 '사회,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스스로 직업을 통해 익힌 기술이나 지식을 제공하는 자원봉사 활동'으로 정의된다. 변호사의 프로보노란 사회,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변호사가 가진 법률적인 기술이나 지식을 제공하는 활동이 될 것이고, 위 활동에는 소수자·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익법률자문, 공익소송 등의 무료 법률서비스, 제도개선, 입법 활동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공익법률지원 활동 및 관련 활동이 포함될 수 있다. 로펌 프로보노란 로펌 또는 로펌의 구성원들이 공익을 위하여 수행하는 공익법률지원 활동 및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1] 참고로 미국의 로펌 프로보노 운동인 로펌프로보노 챌린지 선언문에서는 프로보노라는 용어는 통상 보수에 대한 기대 없이 일상적인 영리활동 밖에서 이루어지는 로펌의 활동으로서 (1) 경제적 약자 혹인 경제적 약자들을 지원하는 자선·종교·시민·지역사회·정부·교육 단체들에 대한 법률지원, (2) 시민권, 시민 자유, 공적 권리 등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개인·단체·조직 등에 대한 법률지원, (3) 정상적인 법률 비용 지출이 단체의 재정을 상당히 고갈시키거나 법률 비용 지출이 부적절한 자선·종교·시민·지역사회·정부·교육 단체들에 대한 법률 지원 활동을 포함한다고 규정한다.[2]

이와 같은 로펌의 프로보노는 법률지식 기부라는 점에서 다른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나 로펌의 다른 사회공헌활동과 구별된다. 이러한 프로보노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법접근성 강화와 제도 개선을 통한 사회 문제 해결에 이를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특히, 로펌 프로보노는 점점 더 세분화되고 복잡해지는 공익영역 법률 이슈 대응에 있어

1) 양동수, "로펌 프로보노 활성화 방안 연구", 『2012 로펌 프로보노 현황과 전망 심포지엄』 (법무법인(유한)태평양 공익활동위원회 창립 10주년 및 재단법인 동천 창립 3주년기념 심포지엄, 2012. 12. 14.), pp.84-85.
2) Law Firm Pro Bono Challenge Commentary to Statement of Principles. Principle 7.

보다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점, 다양한 전문가의 결합을 통해 보다 통섭적이고 영향력 있는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점, 조직적·효율적인 지원 체계를 통해 프로보노의 상당한 양적 증가를 기대할 수 있는 점, 사법정의와 소수자배려 등 로펌의 공익감수성 증가로 로펌의 기업 등에 대한 일반적인 법률지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등의 특징이 있다.

로펌에게 있어서도 프로보노는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사회공헌 활동으로서 기업 홍보와 이미지 제고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소속 변호사들이 직접 다양한 사건에 참여함으로써 업무 역량을 높이고, 변호사 일에 대한 보람과 만족도를 높이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실제 프로보노 사건 중개를 하다 보면, 공익 소송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사들의 비율이 높은데, 이는 송무와 자문이 나뉘어져 있고, 업무가 특정 분야로 한정된 변호사들에게 있어 다른 분야의 송무를 경험해보고자 하는 수요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관련하여 프로보노 인스티튜트 에스더 라던트 회장(Esther F.Ladent)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대부분의 로펌이 프로보노 활동이 기존 업무를 방해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프로보노는 다양한 사례를 변론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로펌은 장기적으로 실력 있는 변호사를 키울 수 있다. PBI가 레이텀앤왓킨스(Latham&Watkins LLP)와 함께 세계 71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프로보노 설문 및 연구에서도 프로보노 활동이 로펌과 변호사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똑똑한 기업은 당장 눈앞의 이익을 쫓기보다 사람에게 투자한다."[3]

2. 로펌 공익활동 연혁

2000년대 초반 태평양, 지평 등이 로펌 내에서 공익활동위원회를 조직하여 로펌 프로보노의 기틀을 마련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위원회 구성만으로 로펌 프로보노가 활성화되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4] 이후 2009년에 태평양이 재단법인 동천을 설립하고 최초

3) 더나은미래, "나눔의 리더를 찾아서 14 에스더 라던트 미국 프로보노 인스티튜트(PBI)회장"(2014. 3. 14; https://blog.naver.com/future4all/140208602738)

4) 2005년에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로펌의 프로보노 담당자들과 진행한 심층면접결과를 참고로 당시 로펌 소속 변호사들은 주로 개별 의지에 따라 공익활동을 수행하였고, 특히 사회적 약자 보다는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에 대한 서비스로서의 공익활동이 많았던 것으로 평가되기도 하였다.(한창완, "한국 로펌 공익활동의 과거와 현재, 성과와 과제," 『공익법 운동의 현황과 과제』(재단법인 동천 5주년 기념 공익세미나, 2014. 6. 25.),

로 로펌 프로보노를 위한 공익전담변호사를 두기 시작하였다. 이후 세종이 2012년에 기업사회공헌 전담변호사를 채용하였고, 지평이 2014년에 사단법인 두루를 설립하는 등 비영리법인 설립과 공익전담변호사 채용이 확대되었다. 2013년도부터 로펌공익변호사들이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며 상호 연대의 기반을 마련하였고, 2016년에는 10대 로펌을 중심으로 구성된 로펌공익네트워크가 조직되면서 로펌 간의 프로보노 활동을 공유하고 협력하는 체계가 더욱 강화되었다. 로펌공익네트워크는 현재 12개 로펌(광장, 김앤장, 대륙아주, 동인, 로고스, 바른, 세종, 원, 율촌, 지평, 태평양, 화우)이 참여하고 있고, 정기적으로 대표자회의, 책임변호사 회의 등을 진행하며 로펌 라운드테이블, 공익활동 심포지엄 등을 개최하고 있다. 더불어 네트워크 내 로펌들은 난민 분야 단체를 공동으로 지원하면서 순차적으로 난민 소송을 진행하고 난민법률지원 교육 등으로 협력하기도 한다. 향후 공익위원회 관련 입법 연구 등 공동사업의 범위를 더욱 확대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3. 로펌 프로보노 성장과 현황

앞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최근 몇 년 사이 로펌의 프로보노는 지원 체계 측면에서 확연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로펌 프로보노 발전 현황과 관련하여 주요 지표 및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가. 조직 구성- 공익활동위원회, 공익전담 변호사 등

우선 로펌 프로보노 성장에 있어 핵심 인프라가 되는 공익활동 조직 및 지원 체계와 관련한 사항을 2012년, 2014년 2016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표1. 로펌 프로보노 조직 체계 연혁]

로펌	2012년	2014년	2016년
태평양 (재단법인 동천)	공익활동위원회 공익전담변호사 3	공익활동위원회 공익전담변호사 4	공익활동위원회 공익전담변호사 5
지평 (사단법인 두루)	공익활동위원회	공익활동위원회 공익전담변호사 1	공익활동위원회 공익전담변호사 4
광장	공익활동위원회	공익활동위원회	공익활동위원회

p47}.

로펌	2012년	2014년	2016년
세종 (사단법인 나눔과이음)	공익센터 공익전담변호사 1	공익센터 공익전담변호사 1	공익전담변호사 1
화우 (화우공익재단)	공익활동위원회	공익활동위원회 공익전담변호사 1	공익활동위원회 공익전담변호사 1
율촌 (사단법인 온율)	공익위원회	공익위원회	공익위원회 공익전담변호사 2
원 (사단법인 선)	공익위원회	공익위원회 공익전담변호사1	공익위원회 공익전담변호사 1
김앤장	공익활동위원회	사회공헌위원회 공익전담변호사 2	사회공헌위원회 공익전담변호사 2
대륙아주		공익위원회	공익위원회
로고스 (사단법인 희망과동행)		공익팀	공익팀
동인			공익위원회

위 표는 2012년부터 2016년도를 기준으로 비교하였으나, 이후 바른이 사단법인 정을 설립하고 공익전담변호사를 채용하였으며, 동인, 대륙아주도 공익전담변호사를 채용하였다. 그 외에도 2018년 기준 화우공익재단의 공익전담변호사는 2명이고, 두루의 공익전담변호사는 7명이며 추가 채용 예정이다. 2009년 재단법인 동천이 설립될 당시 로펌 공익전담변호사는 1인이었으나, 2018년 현재 로펌 공익전담변호사의 수는 20명이 넘는다.

나. 공익활동에 대한 정책 및 내규

2003년~2005년 참여연대, 공감의 실태조사 및 심층 면접에 따르면,[5] 조사 당시 공익활동을 내규로 규율하고 있다고 응답한 로펌은 총 7곳이었는데(김앤장, 태평양, 화우, 지평, 로고스, 한결, 서정), 이중에서 다수는 이를 공개할 수 없다고 하였고, 공개한 곳에서도 공익활동을 업무시간으로 인정하는지, 인정한다면 어느 활동을 공익활동으로 볼 것인지 등에 대한 부분을 정책에 반영하고 있는 로펌은 거의 드물었다.[6]

5) 참여연대는 2003년, 2004년 두 번에 걸쳐 10인 이상의 변호사가 활동하는 로펌 각 32개, 38곳을 대상으로 하여 서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공감은 2005년 7월말에서 8월초에 걸쳐 국내 10대 로펌을 대상으로 하여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6) 양동수, "로펌 프로보노 활성화 방안 연구", 『2012 로펌 프로보노 현황과 전망 심포지엄』 (법무법인(유한)태평

그러나 2016년도 로펌공익네트워크 소속 로펌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공익활동을 업무시간으로 인정하는 로펌이 6곳, 평가, 승진, 보상에 반영하는 곳이 7곳으로 집계되었다.[7] 공익활동 정책 및 내규를 가진 로펌이 확대되었을 뿐 아니라 그 내용도 이전과 비교해 구체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공익활동 시간

공익활동의 대표적 양적 지표로는 변호사 1인의 평균 공익활동 시간과 20시간 이상 공익활동 참여 변호사의 비율이 있다. 정기적으로 공익활동보고서를 발간하여 공익활동 시간을 공개하는 로펌을 중심으로 2014년, 2015년, 2016년의 공익활동 시간 관련 지표를 살펴보면 평균 공익활동 시간 및 20시간 이상 공익활동 참여 변호사 비율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다.[8] 2016년도에 로펌 공익네트워크 소속 로펌 공익활동 운영 현황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1인당 평균 공익활동 시간은 60시간 이상이 1곳, 40시간 이상이 1곳, 30시간 이상이 1곳, 20시간 이상이 4곳이 있었다. 20시간 이상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변호사 비율은 50% 이상이 1곳, 40% 이상이 3곳, 30% 이상이 1곳, 20% 이상이 1곳이 있었다.[9]

프로보노 시간과 관련하여 미국 프로보노챌린지는 최소한 매년 회사의 총 비용 청구 가능 시간의 3%에 해당하는 시간이나 변호사당 60시간을 프로보노 활동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위 시간은 로펌 대표들이 함께 논의하여 결정한 것으로 총 근무시간 3%를 환산하면 변호사에게 요구되는 연간 프로보노 활동이 50시간으로 계산되는데, 일주일에 1시간, 한 달에 4시간 정도면 로펌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변호사들이 충분히 공익활동을 할 수 있다는 조사에 근거한 것이다.[10] 프로보노 지원 인프라를 갖춘 로펌들의 경우

양 공익활동위원회 창립 10주년 및 재단법인 동천 창립 3주년기념 심포지엄, 2012. 12. 14.), p.89.

7) 유욱·이희숙·백민, “로펌 공익활동의 현황과 과제”, 『로펌 공익활동 활성화 세미나』 (로펌공익네트워크, 2016. 11. 7.), p12.

8)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경우 변호사 1인당 평균 공익활동 시간은 2014년에 38.53시간, 2014년에 39.73시간, 2016년에 39.3시간, 20시간 이상 공익활동 참여 변호사 비율은 2014년에 39.94%, 2015년에 43.9%, 2016년에 44.27%이다. 법무법인 지평의 변호사 1인당 평균 공익활동 시간은 2014년에 35.85시간, 2015년에 35.84시간, 2016년에 43.46 시간, 20시간 이상 공익활동 참여 변호사 비율은 2014년에 55.45%, 2015년에 58.47%, 2016년에 71.2%이다. 법무법인 율촌의 변호사 1인당 평균 공익활동 시간은 2014년에 19시간, 2015년에 24.6시간이다. 법무법인 화우의 변호사 1인당 평균 공익활동 시간은 2015년에 20.58시간, 2016년에 22.2시간이다(2014, 2015, 2016 각 공익활동 보고서 참조).

9) 유욱·이희숙·백민, “위의 글”, p14.

10) 더나은미래, “나눔의 리더를 찾아서 14 에스더 라던트 미국 프로보노 인스티튜트(PBI)회장”(2014. 3. 14,

의무사항인 20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공동의 목표치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는 노력들을 통해 전체 프로보노 확대를 이끌어가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라. 활동 분야 및 내용

로펌 프로보노에서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활동 분야 및 내용이 다양화 되었다는 것이다. 일찍이 공익활동위원회를 조직했던 태평양과 지평은 주로 장애인, 난민이주민, 북한탈북민 등 전통적인 공익 영역에서 법률지원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후 아동, 여성, 청소년, 사회적경제, 복지 등으로 활동 영역은 더욱 넓어졌고, 최근에는 활동 분야가 더욱 다양해졌다. 태평양은 사회주택, 시민자산화 분야 지원, 김앤장은 개성공단입주기업을 위한 제도 개선, 동인은 한부모 가정을 위한 제도 개선, 로고스는 교도소 출소예정자에 대한 법률 교육, 바른은 학내 종교의 자유 소송, 세종은 코피노 지원 방안 연구, 원은 지구법(환경) 강좌, 동물권 보호, 온율은 성년후견제도, 지평은 지뢰피해자 지원, 화우는 한센인권 공익소송 등 각 로펌 별로 독자적인 활동 영역을 개발하며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사회문제는 더욱 복잡·다양해지고 있고, 공익활동의 영역도 크게 변화되고 있는바, 로펌들이 이와 같이 새로운 영역을 찾아 프로보노 활동을 다양하게 하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급격한 사회 변화 속도에 맞게 법제도가 변화될 필요가 있는데 비영리·공익 분야에서는 프로보노가 아니고서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기가 쉽지 않다. 로펌이 프로보노를 통해 이 간극을 매우고 사회변화를 선도하는 일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Ⅲ. 로펌 프로보노 활동 관련 쟁점

1. 로펌 공익전담변호사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최근 몇 년 사이 로펌 공익전담변호사의 수가 현저히 증가하였다. 로펌 프로보노 체계를 갖추는 것의 시작으로 공익전담변호사를 채용하기도 한다. 반면, 로펌 소속 변호사들의 주도적인 역할과 고루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공익전담변호사를 두지 않는 로펌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우선

https://blog.naver.com/future4all/140208602738)

로펌 소속 변호사들의 개인적인 공익활동을 넘어 로펌 프로보노로 나아가기 위하여는 로펌 차원에서 공익활동을 기획하고, 지원하며, 그 결과를 로펌의 공익활동 지표 형태로 보고하는 절차와 이를 위한 내부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실제 지원 활동을 진행함에 있어 프로보노의 고객, 즉 관련 네트워크 기반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법률 지식 외에 공익활동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로펌 프로보노 지원의 양과 성격을 고려할 때 로펌 내 각 분야별로 전문가가 나뉘어져 있는 것처럼 해당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 규모는 해당 로펌 변호사의 수와 실제 수행하는 공익활동의 규모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로펌 프로보노 지원 인력이 반드시 변호사일 필요는 없고, 로펌이 추구하는 방향성에 따라 일반 직원 중심의 지원 체계를 갖추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일반적인 사회공헌과는 달리 프로보노라는 특징을 고려할 때 공익전담변호사를 두는 것이 유리하다. 변호사들의 경우 전문성을 바탕으로 단기간 내에 시민단체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고,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활동할 수 있다. 또한 로펌과 단체의 협력 과정에서 어려움 중 하나는 자문에 있어 양측이 기대하는 검토 기간이 다르다는 점인데 공익전담변호사가 필요한 경우 직접 대응하면서 긴급한 수요를 채울 수도 있다. 또한 공익전담변호사는 단체와의 수시 회의와 네트워크를 통해 법제도 개선 활동 등 보다 장기적이고 많은 시간을 요하는 활동을 진행할 수 있고, 공익전담변호사의 위와 같은 활동에 연계하여 로펌 변호사들이 제도 개선 활동에 참여하는 등 프로보노 유형이 더욱 다양해질 수 있다. 동천의 경우 2017년도부터 집중적으로 비영리법인(단체) 관련 전반의 법령 개선 활동에 참여하였는데 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3명 정도의 변호사가 매주 관련 회의에 참여하고 회의 결과를 법안에 반영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해당 법률안을 태평양 변호사들과 함께 검토하면서 시민단체의 요구와 로펌의 전문성을 결합한 방식으로 제도 개선을 지원하기도 한다.

미국 로펌의 경우도 다수가 사내 프로보노 프로그램을 운영할 변호사를 고용하고 있다. 위 변호사들이 로펌 변호사들의 프로보노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가 공익전담변호사로서 프로보노 업무에서 있어 사건을 배당하고 소속 변호사들을 감독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관련하여 Simpson Thacher & Bartlett LLP의 프로보노 변호사인 Harlene Katzman 미국의 프로보노 변호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프로보노 프로그램은 변호사 자격을 갖춘 로펌의 프로보노 변호사(ProBono Counsel)가 운영한다. 프로보노 변호사는 상근 간사와 비서의 업무지원을 받는다. 대부분의 로펌은 사내 프로보노 프로그램을 운영할 변호사 한 명을 고용하는데 일부 로펌에서는 그 운영자가 파트너이다. Simpson Thacher와 O'Melveny를 포함한 다수의 로펌에서는 프로보노 변호사가 운영 및 행정을 책임질 뿐만 아니라 직접 사건을 수행하고 소속 변호사들을 감독하는 등 법률 업무를 담당한다. 다른 로펌에서의 프로보노 변호사는 순전히 행정적 직책이다. 몇몇을 제외한 대부분의 경우, 프로보노 변호사 직책을 맡는 이는 다년간의 법률 업무를 수행해온 변호사 자격을 소지한 자이다. 비록 모든 로펌이 이 모델을 따르는 것은 아니지만, 지난 10년간 미국 내 추세는 이러한 접근방식으로 변화해가고 있다.'[11]

현재 우리나라는 로펌 공익전담변호사가 저년차 변호사인 경우가 많은데 로펌에서 다년간 법률 업무를 수행한 파트너 변호사가 프로보노를 전담하는 변호사로서 역할을 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파트너 변호사가 직접 프로보노 사건을 기획, 배당, 지도·감독하는 경우 프로보노가 로펌 업무 중 하나로 자리잡고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진행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2. 로펌 내 프로보노 지원 조직 vs 비영리법인 설립

우리나라의 경우 영미권 로펌들과는 달리 프로보노를 위한 독립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는 경우가 많다. 2009년 태평양이 재단법인 동천을 설립하였고, 2011년 로고스가 사단법인 희망과 동행을 설립하였다. 2013년도에 원이 사단법인 선을 설립하였고, 이어서 2014년에 지평이 사단법인 두루, 세종이 사단법인 나눔과이음, 화우가 화우공익재단을 설립하였다. 최근에는 바른이 사단법인 정을 설립하였다. 이와 같은 추세와 달리 김앤장의 경우 공익전담변호사 2명을 둔 사내 사회공헌위원회를 조직하여 운영 중이고 현재로서는 별도 법인을 설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

미국 로펌의 경우 대부분 프로보노 전담 변호사 및 전담 조직을 사내에 두고 있다. 그 외 펠로우 변호사 제도를 두어 해당 변호사의 급여 상당을 지원하고, NGO단체의 상근변

11) David A. Lash·Harlene Katzman, "미국 로펌 프로보노 현황 미국 로펌 프로보노 모범사례"발제 자료 『2012 로펌 프로보노 현황과 전망 심포지엄』 (법무법인(유한)태평양 공익활동위원회 창립 10주년 및 재단법인 동천 창립 3주년기념 심포지엄, 2012. 12. 14.), p.62.

호사로 일하도록 한다.[12] 우리나라 로펌들이 비영리법인을 별도로 설립하는 경우가 많은 것은 초기 태평양이 동천을 설립하여 적극적으로 프로보노 활동을 진행한 것도 일정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로펌에서 추구하는 바가 로펌의 프로보노 활성화 외에도 공익법단체로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라면 별도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효과적이다.[13] 다만 위 경우 법인 운영을 위한 행정 업무 및 인력·예산 등이 상당히 수반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최근 공익법인의 투명성과 책무성에 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면서 각종 규제가 강화되고 있고, 공익법인의 주무관청을 통합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공익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안도 추진되고 있다. 공익법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수록 법인 운영을 위한 행정력은 더욱 많이 요구될 것이고, 로펌과의 공동 사업 및 협력과 관련하여서도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따른 세무 이슈 등 여러 방면에서 주의를 요한다. 한편, 별도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도 로펌 차원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담당 조직이나 인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아래에서 설명하겠지만, 로펌의 CSR은 프로보노 활동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며, 회사 경영 관련 이슈이므로 별도 법인을 통해서는 한계가 있다.

3. 공익활동보고서 vs 사회책임보고서

로펌들은 매년 초 지난 1년간의 공익활동 지표를 공개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공익활동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태평양, 지평, 율촌, 원, 화우, 광장, 세종 등). 위 공익활동보고서를 통해 로펌 프로보노 현황을 살펴볼 수 있고, 사회적으로도 로펌 프로보노에 대한 공감대를 높인다는 측면에서 매우 고무적이다. 한편, 지평은 위 공익활동보고서에 더하여 2016 법무법인 지평 사회책임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위 보고서는 법과 윤리(로펌 내 이익충돌문제 해결을 위한 내부통제절차, 위법행위 발견시 통제절차, 공정한 전문가 활용), 차별금지와 인적 다양성(구성원의 다양성, 소수자 차별금지, 채용과정의 투명성, 공정성, 일·

12) 2016년 기준으로 미국 15위권 내의 로펌의 펠로우십 현황을 조사한 결과, 1개 로펌 외에 나머지 모든 로펌은 펠로우제도를 두고 있었고 Greenberg Traurig의 경우 매년 7~8명의 펠로우 변호사를 지원하며 1999년부터 2016년 당시 142명의 변호사를 지원하였다.

13) 참고로 동천은 프로보노 활동지원, 기업 사회공헌 활동 지원, 자체 공익법센터로서의 역할을 함께 하고 있다. 프로보노 지원의 경우에도 태평양 변호사뿐 아니라 전체 변호사를 대상으로 NPO법률지원단을 양성하고, 단체와 매칭하는 지원을 하고 있으며, 매년 50여 명의 변호사가 NPO법률지원단으로 활동 중이다. 변호사 5인, 사무국 4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1년 지출 총계는 10억 원 가량이다.

가정 양립을 위한 근무 환경), 기부, 사회봉사, 공익활동, 법조인 양성, 적절한 사건 수임, 환경, 정보공개와 사회적 책임 보고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로펌 프로보노와는 구별되는 이슈로서 로펌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 관련하여 홍성수 교수는 "로펌의 공적 책무에 대하여 로펌의 화답이 '우리는 기부와 사회봉사를 열심히 하고 있다'일 수는 없다. 기업의 하나인 로펌 역시 기업 이윤 추구 뿐만 아니라 소비자, 종업원, 지역사회, 하청기업, 정부, 환경 등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가 적용될 수 있고, 로펌은 일반 기업보다 더욱 강력한 사회적 책임을 부여받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14]

로펌 프로보노 활성화를 논의하는 발제인 만큼 로펌의 사회적 책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은 아니나, 적어도 간과하지 않아야 할 것은 로펌 프로보노는 사회적 책임의 내용 중 하나이고, 프로보노가 로펌의 사회적 책임을 대체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또한 이는 상호 밀접히 연관된 사항으로 로펌이 사회적 책임을 충실하게 이행할 때 로펌 프로보노는 그 진정성을 더욱 인정받고, 관련 단체들과 밀접히 연대하며 더욱 큰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최근 지평이 사회책임보고서를 발간한 것은 로펌의 사회적 책임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로펌의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지표 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현재 글로벌 로펌들의 사회적 책임 보고서 발간이 확대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일반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 보고서를 발간하는 경우도 현저히 증가하였는바, 우리나라 로펌도 위와 같은 흐름에서 예외일 수는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15] 또한 미국의 경우 외부 기관들이 로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순위를 매김에 있어 사회적 책임에 관한 사항이 중요한 항목으로 포함되어 있어 로펌에서는 이에 대하여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16] 우리나라

14) 홍성수, "로펌의 사회적책임과 공익활동", 『로펌 공익활동 활성화 세미나』(로펌공익네트워크, 2016. 11. 7.), p.147.

15) '2003년 기업이나 조직들의 사회적책임보고서(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발간 실적이 4건이었으나 2011년에는 88건으로 급증하였다. 글로벌 로펌도 이러한 흐름에 동참하고 있는데 영국계 글로벌 로펌들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 보고서를 발간하기 시작했고, Allen & Overy는 2007년 연례보고서에 사회적 책임 부분을 포함시켰으며, 2008년에는 Clifford Chance, Linklaters, Freshfields Bruckhaus Deringer 등의 대형로펌이 사회적 책임 보고서를 발간했다.'(홍성수, "위의 글", p.63.)

16) '법률가의 취업 지원을 위한 전국연합'(National Association for Law Placement, NALP)은 로펌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예비변호사와 현직 변호사에게 제공하고 있는데 여기서 수집·평가하는 정보는 로펌 구성원

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가 2014년부터 로펌, 변호사 사무소를 대상으로 일과 가정 양립 법조 문화상을 매년 시상하고 있는데, 로펌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와 평가는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로펌은 이와 같은 변화에 대응하여 사회적 책임 전반에 대한 정책을 담당할 내부 조직 구축, 관련 지침 마련, 로펌 공익활동을 포함한 사회책임보고서 발간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로펌 프로보노는 더욱 안정적이고 영향력 있게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4. 공익활동 의무화 vs 자율화

로펌 내 공익활동에 대한 정책에 있어 공익 활동 시간을 업무시간과 같이 인정하고 평가 보상 및 승진 등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더하여 공익활동을 의무로 규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할 것인지의 이슈가 있다. 미국 로펌의 경우 영미 로펌은 대체로 자율적 pro bono를 권장하나, Dechert[17]는 모든 변호사가 최소 25시간을 하도록 강제하고 있다.[18] O'Melveny는 1년차 변호사에게는 1건의 프로보노 활동 참여를 요구하며 그 외 소속 변호사들은 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19] Dechert의 프로보노 변호사는 2017 PILNet Global Forum에서 프로보노의 의무화에 대하여 로펌의 대외적 이미지, 소속 변호사 만족도, 리크루팅 시 효과 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고, 프로보노 담당자 입장에서도, 매년 로펌 내 어느 정도 시간이 가용한지 파악할 수 있어 업무 수행 및 분장이 수월하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공익활동의 속성상 자율성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측면이 있고, 실제 대부분의 로펌은 변호사들이 자율적으로 프로보노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변호사법 등에서 공

의 다원성 (여성, 소수인종, 장애인, 성소수자 변호사, 파트타임 변호사의 비율), 소속변호사와 파트너의 비율, 총 근로시간, 공익활동 프로그램, 교육훈련이나 전문역량개발의 기회 등이다. 전문직에 대한 취업정보를 제공하는 전문기관인 '볼트'(Vault)에서도, 소속변호사·파트너 관계, 기업전망, 보수, 직장문화, 공식·비공식 교육훈련, 환경, 근로시간, 공익활동, 중도퇴사율, 직장만족도, 투명성 등을 기준으로 각각 로펌의 순위를 매기고 있다. 로펌 순위를 제공하는 '애브리인덱스'(AveryIndex)도 로펌별 평가에서는 인적 다원성과 공익활동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로닷컴'(law.com)에서는 소수자 비율을 바탕으로 다원성 순위(diversity scorecard)를 매년 발표하고 있다. '직장여성 미디어'(Working Mother Media)에서는 각 로펌에서의 여성 파트너 비율, 육아휴직 기간, 육아 기간 근로시간 단축이나 근로시간 탄력 운영 등의 실태를 조사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홍성수, "위의 글", pp.67~68.)

17) Dechert LLP는 900명 이상의 변호사가 일하고 있고, 미국, 유럽, 아시아, 중동 지역 등에 사무소가 있으며, 미국 내 매출액 기준 30위 정도의 로펌이다.

18) Vault Guide to Law Firm Pro Bono Programs, 2017 Edition, p.127.

19) David A. Lash·Harlene Katzman, "위의 글", p.60.

익활동 시간을 의무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시간에 대하여는 의무화하거나 초기 공익활동 경험 확대 측면에서 신입변호사들에 대하여 의무화하는 내부 규정을 두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20시간 미충족에 대하여 구체적인 패널티를 부과하지는 않더라도 로펌이 공익활동을 내부 규정으로 의무화하는 것 자체로 공익활동에 대한 위상이나 처우가 달라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공익활동을 의무화하는 경우 변호사들의 관심을 반영하여 분야별로 변호사 리스트를 만들고 해당 순서에 따라 사건을 배당함으로써 지원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구성원에게 고루 프로보노 활동의 기회가 제공되는 효과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Ⅳ 로펌 프로보노 활성화를 위한 제언

1. 로펌 프로보노 활성화를 위한 통합 중개 기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십여 개 로펌들이 프로보노 활동을 위한 공익전담변호사, 공익위원회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다. 그 외 대부분의 로펌들은 프로보노를 위한 조직체계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작은 규모의 로펌들이 독자적으로 지원 조직을 갖추는 것을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공익전담변호사를 둔 경우라도 소수에 그치는 경우 로펌 구성원의 다양한 관심 분야를 반영한 프로보노 중개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더 많은 로펌들이 프로보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방법으로 전문적으로 로펌 프로보노 중개 및 지원을 하는 기관을 생각해볼 수 있다. 위 기관은 다수 로펌으로부터 회비와 기부를 받고, 다수 공익전담변호사를 채용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공익법률지원 활동을 하며 로펌의 수요에 따른 사건을 중개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각 로펌의 프로보노 활동을 위한 교육, 활동 분석 및 보고서 등으로 로펌 프로보노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미국 프로보노 인스티튜트(PBI)와 유사한 모델이다.

프로보노 인스티튜트(PBI)는 1996년에 설립된 비영리기관으로 대형 로펌, 기업 사내 법무팀 및 공익단체들과 협력하여, 사회적 취약계층과 비영리단체에게 프로보노 활동을 통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프로보노 인스티튜트(PBI)는 대형로펌(변호사수 50명 이

상)을 대상으로 멤버십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변호사 수에 따라 $1,500~$3,500의 연회비를 차등 설정하며 컨설팅 서비스, 교육, 자료, 보고서, 네트워킹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2017년 기준으로 117 개의 로펌이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다. 로펌이 프로보노 목표 기준을 설정하고 서명함으로써 참여하는 로펌 프로보노 챌린지 프로젝트를 운영 중이며 이를 통해 로펌의 프로보노 활동을 독려하고 지원하고 있다.[20] 프로보노 인스티튜트(PBI)는 로펌 프로보노 챌린지 외에도 기업 프로보노 챌린지(Corporate Pro Bono Challenge)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이는 2006년에 시작되었고, 현재 사내 법무팀 프로보노 활동의 표준기준이 되고 있다. 기업 프로보노 챌린지에 서명한 모든 법무팀들은 기존 프로보노프로그램을 강화하거나 또는 새롭게 시작하기 위한 관련정보와 가이드라인, 그리고 맞춤형 기술 지원 등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으며 현재 100개 이상의 법무팀이 참여하고 있다.[21]

공유경제가 화두인 오늘날 위와 같은 로펌 프로보노 전문 기관이 설립되는 경우 로펌으로서는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인 프로보노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각 로펌의 재정과 역량이 집적됨에 따라 보다 많은 공익변호사들이 활동할 수 있고, 구성원의 관심에 따른 다양한 영역으로 프로보노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현재 사내변호사들의 프로보노 활동이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위와 같은 프로보노 전문기관의 역할을 통해 사내변호사들의 프로보노를 활성화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다.

2. 프로보노 활동을 위한 비프로보노 활동

프로보노 코디네이션을 위해 많은 단체를 방문하고, 로펌 프로보노에 대해 소개를 하지만 인사 정도 나눈 사이의 단체들이 사건을 의뢰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대체적으로 재정은 열악하고, 쌓여 있는 일들은 너무 많은 NGO 단체들로서는 눈앞에 닥친 문제들을 해결하고, 급히 도움이 필요한 사건들을 처리하느라 지나치게 바쁘다. 당장 소장이나 고소장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변호사들과 함께 공익소송을 발굴하고 기획하기는 쉽지 않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로펌이 우선적으로 할 일은 단체와 자주 만나고 단체의 수요에 따른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단체와 신뢰가 쌓이고, 상호 이해가 깊어질 뿐 아니라 해당 분야 활동에 대한 전문성도 쌓이고 자연스럽게 프로보노 활동의 기회가 확대된다.

20) 공감, "해외로펌 프로보노 사례", p.162, 프로보노 인스티튜트(PBI) 홈페이지 참조(http://www.probonoinst.org/).
21) 프로보노 인스티튜트(PBI) 홈페이지 참조(http://www.probonoinst.org/).

참고로 동천에서는 현재 상·하반기 총 8개의 단체를 선정하여 단체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단체지원 사업 공모 시 많은 단체들이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는데 사업 내용 중 법률지원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재정 지원과 더불어 프로보노로 협력한다. 단체지원 사업을 통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발달장애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새로운 유형의 근로계약서 표준 제작, 복지제도를 알기 쉽게 정리한 복지권리수첩을 제작하여 거리 상담을 통해 배포하는 활동, 대안학교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등이 있었다. 단체들이 제시한 참신한 사업에 참여하며 해당 영역에 대한 이해를 더 높이고 전문성을 쌓는 기회가 되기도 하였다.

3. 전문가 협업 강화

최근 동천은 NPO 운영 관련 자문을 확대하고 있는데 변호사 외에도 세무사, 노무사, 변리사 등 여러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또한 사회적 기업의 사업 인허가 문제 등과 관련하여 행정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며 사건 해결의 방향을 정하기도 한다. 로펌에서는 변호사들 외에 다양한 전문가들이 함께 일하고 있다는 것이 로펌 프로보노의 강점이고, 이러한 강점을 활용하여 프로보노를 진행하는 경우 상당한 사회적 가치 형성과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 로펌 내에서도 전문가들이 프로보노에 있어 소외되지 않고 소속감을 더욱 높이는 기회가 될 수 있고, 프로보노를 통해 업무만족도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변호사와 달리 다른 전문가의 경우 법률상 공익활동시간이 의무적으로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로펌에서 정책적으로 전문가의 공익활동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연일정 시간 이상 공익활동에 참여하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다. 공익활동성과를 발표함에 있어서도 전문가들의 활동 수치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소개함으로써 프로보노가 전문가 그룹 전반에 확산되는 데 기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4. 지역 로펌 프로보노 활성화

공익전담변호사들의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100여 명의 공익전담변호사들 중 지역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들은 한 자리 숫자이다. 로펌 프로보노 역시 대형로펌이 있는 서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 사회 여러 인프라들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프로보노 역량도 예외는 아닌 것이다. 지역 로펌 프로보노 활성화를 위하여 로펌 프로보노 세미나 등을 지역에서도 개최하고 지역 변호사회 등과 협력하여 지역에 있는 로펌들이 프

로보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격려하는 기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프로보노에 관심이 있는 지역 로펌을 조사하여 지역에 사건이 있을 경우 협력하는 구조를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다. 더불어 지속적으로 지역에서 활동하는 공익전담변호사를 양성할 필요가 있는데 지역에서 모금을 통한 활동이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서울 지역 대형로펌들이 지역 공익변호사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노력과 별개로 로펌 프로보노 활동에 있어 거리상의 한계를 두지 않고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노력은 계속 이어져야 할 것이다.

Ⅴ. 나가며

앞에서 로펌 프로보노의 성장 현황과 제언들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프로보노 조직 체계와 양적 활성화 측면에서 이야기가 많이 되기도 하였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일 것이다. 프로보노는 재정 지원처럼 한 번에 끝나는 일이 아니다. 의뢰인의 사정에 공감하고, 해결을 위해 수 없이 소통하고, 결과를 기다리며 마음 졸이고, 함께 기뻐하는 과정의 연속이다. 이 과정에서 로펌 프로보노의 진정성은 드러나고 평가되지 않을 수 없다. 1년에 몇 건의 사건을 수행했는지, 1인당 총 몇 시간 활동하였는지 이런 지표들을 공개하고 경쟁하기도 하지만, 결국 로펌 프로보노의 성패는 활동의 진정성으로 결정될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일에 매몰되어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고 있는 나 자신에게도 이 이야기를 남기며 마무리하고자 한다.

[토론문1] 로펌 프로보노 활성화 방안

강정은 변호사(사단법인 두루)[1]

1. 로펌 공익활동 평가지표 개선 및 공개

2013. 2. 대한변호사협회는 '로펌 공익활동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공익활동 평가지표 활용 가이드라인까지 마련했다.[2] 지표가 개발된 지 5년이 흘렀지만, 로펌 중 일부만이 공익활동보고서 발간을 통해 로펌 공익활동 평가지표를 공개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의 경우 '로펌 프로보노 챌린지(Law Firm Pro Bono Challenge)'에 참여하는 변호사 수 50명 이상 규모의 로펌은 1년을 기준으로 매년 공익활동 이행 결과를 '로펌 프로보노 챌린지'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여기서 '로펌 프로보노 챌린지'란 미국 프로보노 인스티튜트(PBI) 및 미국변호사협회 공익활동상임위원회(ABA Standing Committee on Pro Bono & Public Service)가 대형 로펌들과 함께 대형 로펌의 프로보노 목표 기준을 설정하고 서명함으로써 참여하는 프로젝트로, 140여 개의 로펌이 서명하였다.[3]

대한변호사협회는 로펌들로 하여금 '로펌 공익활동 평가지표'를 공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로펌들 또한 적극 협조하여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공익활동을 이행한 결과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 공개는 로펌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로펌의 투명성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평가지표에 대한 평가 및 개선도 뒷받침되어야 한다. 현재 '로펌 공익활동 평가지표'는

1) 사단법인 두루(이하 '두루')는 2014. 9. 법무법인(유한) 지평(이하 '지평')이 후원하여 설립된 비영리전업 공익변호사단체로, 현재 6명(2명 추가 채용 확정, 총 8명)의 공익변호사가 상근하고 있다. 본 토론문은 두루 소속 변호사와 함께 논의하여 작성하였다.

2)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알림마당-공지사항) 참조, https://koreanbar.or.kr/pages/news/view.asp?teamcode=&category=&page=35&seq=679&types=1&searchtype=&searchstr= (2018. 5. 22. 확인)

3) "법원의 프로보노 활동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104쪽,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2017. 3.)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공익대상' 심사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정도이다. '로펌 공익활동 평가지표'가 제정되고 5년이 흘렀지만 지표에 대한 평가나 보완 작업이 없었다는 점은 아쉽다. 로펌지표를 개발했던 연구자,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 등이 모여, 지표를 평가, 재분석하고, 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지표는 수정하고 보완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공익활동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지표상 불분명하다는 점, '1인의 평균 공익활동 시간'과 '20시간 이상 공익활동 참여 변호사 비율'이 대표적인 양적 지표인데 현재 지표로는 특정 변호사에게 공익활동이 집중되는 문제점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문제로 들 수 있다.

2. 사회책임 이행 내역 공개

발제자가 지적하는 것과 같이 로펌 프로보노는 사회적 책임의 내용 중 하나라는 점에서, '로펌의 사회책임 이행내역'을 공개하는 것도 로펌 공익활동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관련하여 홍성수 교수 또한 "로펌의 정보를 정확하게 공개하는 것은 영향력 있는 기업(로펌)의 사회적 책무이다. 로펌의 공적 책무는 공익활동이나 사회공헌활동보다 더 넓은 차원의 사회적 책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4)]

대형 로펌의 사회책임보고서 발간은 국제적인 흐름인데, 클리포드 챈스(Clifford Chance), 링클레이터스(Linklaters), 프레쉬필즈 브룩하우스 데링거(Freshfields Bruckhaus Deringer) 등의 대형 글로벌 로펌들이 사회책임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5)] 지평은 2015년 공익활동보고서에 처음으로 사회책임 이행 항목을 넣었고, 2016년에는 국내 로펌 최초로 독자적인 보고서의 형태로 사회책임보고서를 발간하였다. 2017년에는 '지평・두루 공익활동・사회책임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로펌이 공익활동에서 나아가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실천한다면, 프로보노의 진정성 또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4) 홍성수, "로펌의 사회적 책임과 공익활동", 로펌 공익활동 활성화 세미나 자료집, 62쪽, 46쪽, 로펌공익네트워크(2016. 11. 7.)
5) 홍성수, 위 글, 63쪽

3. 공익활동위원회[6] 활성화

로펌 공익활동의 대부분은 공익활동위원회를 만드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공익활동위원회란 로펌 내 프로보노 활동을 총괄하고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로펌 내 위원회로서 로펌 내 프로보노 활동이 공식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설치되어야 할 조직이다.[7] 로펌의 공익활동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공익변호사 채용만큼 중요한 것이 공익활동위원회의 내실화라고 생각된다.

공익활동위원회가 공익활동의 중추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을 때 로펌 내 공익활동이 추동되고, 발전할 수 있다. 각 로펌은 각자 다른 배경과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부 공익활동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공익활동위원회는 로펌 공익활동의 원칙을 정해 공익정책의 기틀을 닦고, 로펌이 할 수 있는 공익활동의 내용과 범위를 논의하기도 한다. 공익활동위원회는 실제 법인의 공익활동을 총괄하여 기획하고 조정・집행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제 상당수의 대형 로펌들은 공익활동위원회를 설치하거나 공익변호사를 두게 되었다(발제문 Ⅱ. 3. 가. 조직 구성 참조). 로펌 내 공익활동위원회를 둔 의의를 점검하고 공익활동위원회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평가와 내실 있는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로펌 공익활동의 기반을 탄탄하게 닦을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별도의 비영리법인을 설립할 경우 공익활동위원회가 필요한지, 공익활동위원회를 설치한다면 구성원의 구성은 적절한지, 공익활동위원회가 로펌의 공익활동을 위해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는지, 공익활동위원회가 공익변호사[8]와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있는지[9]와 같이 면밀하게 공익활동위원회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

6) 이 글에서 '공익활동위원회'는 사회공헌위원회, 공익위원회, 공익센터 등을 포괄하여 지칭하는 것으로 한다.
7) 각주 2) 자료, "로펌 공익활동 평가지표 및 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54쪽, 대한변호사협회(2013. 2.)
8) 로펌 내에서 상근하는 변호사를 '공익전담변호사'로 칭하기도 하는데, 일부 변호사에게 로펌의 공익활동을 전담하게 한다는 오해될 수 있으므로, '공익변호사'로 부르기로 한다.
9) 미국 로펌 훈톤 앤 윌리엄스(Hunton & Willams LLP)의 경우, 프로보노 전담변호사로 하여금, 로펌 내 프로보노 리더십 위원회를 이끌도록 하고 있다.

4. 공익변호사 양성

로펌은 법률업무의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이다. 로펌에서 상근하는 공익변호사는 로펌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장애, 아동・청소년, 사회적경제, 이주민 등 공익인권영역의 전문성과 역량을 키울 수 있다. 공익변호사의 공익 역량이 강화되면 해당 영역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로펌 변호사의 공익활동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공익변호사 양성은 로펌이 법률가집단으로서 공적 책무를 다하는 것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로펌에 대한 홍보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다양한 형태의 공익변호사 양성 프로그램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로펌은 공익변호사를 직접 채용할 수도 있고, 공익변호사를 꿈꾸는 로스쿨 재학생을 위한 실무수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도 있다. 법률전문성을 가진 로펌이 공익변호사를 지향하는 변호사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교육과 훈련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로펌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두루는 2014년 1명을 시작으로 2018년 현재 총 8명의 공익변호사를 채용했으며, 2015년부터는 매년 여름과 겨울 로스쿨 실무수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펠로우십(Fellowship) 프로그램 등을 통해 공익변호사로 하여금 일정기간 로펌에서 교육과 훈련을 받게 한 뒤 자립할 수 있도록 도울 수도 있다. 펠로우십 프로그램을 거친 변호사는 '지역사회'에서 공익활동을 펼칠 수도 있다. 이 때 로펌은 공익변호사의 가치, 필요성, 의미 등을 지역사회에 널리 홍보할 수 있고, 공익변호사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게 된다. 두루는 〈로스쿨-두루 지역 공익변호사 펠로우십〉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로펌은 '로스쿨'과 연계된 공익변호사 양성 프로그램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로스쿨 리걸클리닉과 연계하여 공익소송을 학생들과 함께 수행할 수도 있다. 실제로 로펌에서 로스쿨 리걸클리닉을 통해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하거나 공익사건을 함께 수행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지평, 태평양 등). 미국 로스쿨의 경우 지역공동체와 연계된 리걸클리닉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의 로펌인 훈톤 앤 윌리엄스(Hunton & Willams LLP)는 1990년 리치몬드의 처치 힐(Church Hill) 지역을 시작으로 지역 밀착형 프로보노 사무소(Neighborhood Office)를 운영하고 있고, 2005년에는 버지니아 로스쿨

과 파트너십을 맺고 캠퍼스 내에 '법률구조지원센터(Legal Aid Justice Center)'를 열어 학생들과 변호사들이 저소득층 가정폭력 피해자 등을 위해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10] 로펌이 지역 공익활동에 기여하고 로스쿨과 협력한 사례로서 참고할 만하다. 지금은 개별 로펌이 공익변호사를 채용하는 형태가 대부분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로펌들이 별도의 공익변호사기금(가칭)을 만들어, 보다 많은 공익변호사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형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5. 공익활동 중개 · 지원 네트워크 협력

로펌 밖에서 공익활동을 중개하고 지원하는 네트워크와 협력하는 것도 로펌 프로보노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어떤 공익활동을 해야 할지, 어떤 단체를 찾아가야 할지 막막한 로펌들에게 네트워크는 큰 도움이 된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는 인권영역별로 프로보노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고, 관련 법률 매뉴얼을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있다. 지난 2018. 1.에는 두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법조공익모임 나우 등을 포함한 공익법률단체 등과 함께 프로보노지원센터와의 연대활동에 관하여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재단법인 동천 NPO법센터'는 NPO 법률지원단 교육, 시니어 프로보노지원단 워크숍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변호사와 공익단체를 일대일로 매칭해 주고 있다.

로펌이 관심 있는 특정한 공익활동 영역이 있다면, 특정 영역에서 현장단체를 중개 · 지원하는 중간기관(단체)과 협력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두루는 아산나눔재단의 '파트너십 온(Partnership ON)' 사업을 통해 아동 · 청소년 관련 비영리법인과 지평 · 두루 변호사를 매칭하고 있고, '루트임팩트', '크레비스파트너스' 등 사회적 경제조직을 돕는 중간지원기관과 협력하여 지평 변호사들이 지속적인 자문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장애인의 권리를 옹호하고 권리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장애인법연구회'는 지난 2018. 4. 로펌공익네트워크와 '장애인권 영역 라운드테이블'을 공동으로 개최하기도 했다.

10) "법원의 프로보노 활동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103쪽,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2017. 3.)

6. 컨트럴 타워 구축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과제로 로펌의 공익활동을 관리・평가・중개하는 '컨트럴 타워' 구축을 생각해 볼 수 있다.[11] 발제자는 미국 프로보노 인스티튜트(PBI)와 유사한, '통합 중개기관' 설치를 제안하기도 했다. 컨트럴 타워로는 로펌의 프로보노 평가지표를 개발한 대한변호사협회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컨트럴 타워의 역할을 하게 될 기관은 로펌의 활동을 평가하고 관리하기도 하지만, 공익인권단체와 로펌 공익활동을 체계적으로 연결하는 역할이 보다 중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익활동을 시작하는 변호사들을 위해 프로보노 관련 기초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하고 네트워킹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컨트럴 타워 내지 통합 중개기관이 설치된다면, 공익변호사를 둘 여력이 없는 중·소형의 로펌, 수도권과 떨어져 있는 지역에 있는 로펌까지 공익활동이 활성화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11) 법률신문, "[특별좌담회] 한국로펌 프로보노의 현황과 과제", 2012. 12. 21.자 기사,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70469

[토론문2] 로펌 프로보노 활성화

박중원 변호사(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

Ⅰ. 들어가며

로펌들의 프로보노 관련 변화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변화되고 있음에 공감하며, 발제문에서 제안하는 로펌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안들 모두 업무현장에서 느끼기에 충분히 공감되는 부분들이다.

이하에서는 발제문에서 밝힌 로펌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안들 가운데 실무를 진행하면서 느낀 몇 가지 점들을 첨언하고자 한다.

Ⅱ. 로펌 프로보노 활성화를 위한 첨언

1. 사회공헌 전문기관 또는 CSR전문가의 활용 필요성

발제문에서 제안하는 통합 중개기관의 활용과 더불어 로펌 자체적으로도 사회공헌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단독으로 진행하는 것보다는 관련 CSR전문가들과의 협력이 유용할 수 있다.

사회공헌의 범위가 단순히 무료법률상담등에 머물러 있지 않고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로펌이 수행할 수 있는 사회공헌사업들 또한 확대되고 있으며, 이 중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이른바 '임팩트' 있는 활동을 기획하기 위하여는 로펌 내부의 사회공헌 담당자 또는 담당부서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사회공헌 전문기관 등과 협력하게 되면 사회공헌 활동의 다양화를 꾀할 수 있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나아가 사회공헌 활동에 관한 아이디어도 함께 발굴하는 등 사회공헌 사업의 기획단계부터 협력하게 되면 보다 창의적인 결과물을 효과적으로 도출할 가능성이 있다.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의 경우 올해 초부터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PBL을 기초로 하는 리걸마인드 형성 프로그램인 '리더'(리걸마인드로 더 나은 세상 만들기)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 또한 교육 분야 사회적 기업인 "씨드콥"과 기획단계에서부터의 협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2. 프로보노 활동을 위한 비프로보노 활동

로펌 내 공익전담 변호사 또는 공익담당 변호사의 업무에는 지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NPO와의 관계형성 부분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발제문에서도 언급하였지만 공익단체들과의 유대관계 형성을 위한 '무주제'의 만남은 단체와의 신뢰 및 상호이해를 충분히 형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렇지 않은 단체들도 많지만 업무협력을 하기로 결정하였음에도 로펌에 대하여 활동 또는 단체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견을 묻거나 기타 협력 또는 요청사항 등을 문의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다. 이 경우 진행 중인 업무와는 무관하게 기관/단체의 활동에 관한 공통의 주제에 관하여 이야기하거나 반드시 법률이슈가 아니라 기관/단체가 직면한 문제상황에 대하여 논의하다 보면 담당자가 조금 더 편하게 로펌의 사회공헌 담당자를 대하게 될 수 있다. 이른바 로펌의 문턱이 낮아지는 것이다.

또한, 잠재적 프로보노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NPO들과의 유대관계 강화는 단순히 해당 기관 또는 단체와의 관계 형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관/단체와 관련이 있는 다른 기관/단체들과의 관계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로펌의 공익활동의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다.

3. 내부 임직원의 참여 독려

발제문에서는 변호사 외에도 세무사, 노무사, 변리사 등 로펌 내 여러 전문가들과의 협업을 강화하여 사회공헌활동을 수행할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여기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로펌의 사회공헌이 소속 변호사들만의 개별적인 책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로펌 내부에서도 변호사 외에 전문가들이 공익활동을 수행하기를 희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여기에 더하여 로펌의 강점이라면 변호사 및 관련 전문가와 함께 업무를 지원하는 내부

임직원들이 있다는 것이다. 로펌의 사회공헌이 소속원들 전체가 함께 수행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능력있는 스탭들 또한 함께 협력할 때 더 큰 시너지가 될 것이다.

로펌의 입장에서는 공익시간이 의무로 되어 있지 않은 비변호사인 인적 자원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의 설정이 필요할 것이다. 여기에는 내부 정책의 설정도 포함될 것이고 무엇보다 로펌의 사회공헌 문화가 적절히 형성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로펌의 문화에 관하여는 항을 바꾸어 생각해 본다.

4. 사회공헌 관련 로펌 문화 형성

로펌의 사회공헌이 성장하려면 소속원들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것이 로펌에서도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하여는 발제문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비용부담 및 진급 등에 있어 공익시간에 대하여도 청구가능한 시간과 같이 인정해 주는 정책의 설정 등이 필요할 것이고, 이에 더하여 사회공헌활동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나아가 필수적인 것으로 고려하는 로펌 문화가 형성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 설정되어 있어도 소속원들이 이를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으면 공익활동에 나아가기란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문화의 형성은 당연히 로펌 경영진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감수성과 소속원들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형성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이는 기본적으로 로펌 내에서 책임지고 해결해야 하는 과제일 것이다.

다만, 이러한 문제가 단순히 로펌 차원에서만 감당할 것인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변호사 직역의 사회적 책임은 기본적으로 해당 직역이 가지는 공공성에서 나오는 것이며 이러한 부분은 변호사의 양성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변호사의 사회공헌에 관한 양식은 변호사 양성을 위한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이후 공익분야의 변호사가 늘어난 것은 고무적인 일이지만, 변호사의 사회적 책임은 이른바 공익변호사만이 가지는 것이 아니고, 로펌 소속의 변호사들

또한 가지는 것이고, 사회공헌에 대한 중대한 책무가 있음이 진지하게 교육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교육과 함께 로펌에서도 정책적으로 사회공헌의 중요성을 인식시킨다면 로펌 내에도 충분한 사회공헌의 문화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Ⅲ. 나가며

지금까지 발제문에서 로펌의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제안한 요소들 중 일부에 관하여 일단의 생각들을 정리해 보았다. 서두에서도 언급하였지만 로펌의 사회공헌은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 하지만, 시작단계에서 나아갈 길이 아직 많이 남아 있기도 하다. 특히 대형 로펌은 다른 로펌들의 사회공헌활동의 지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공헌 자체에 관한 고민 또한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나아가 법 분야 프로보노에서 벗어나 총체적인 사회공헌에 관하여도 함께 고민하여야 할 시점임에 틀림없다. 더 고민하고 연구해야 한다.

[주제3]

시니어 프로보노 활성화

발제 김 한 변호사(시니어 프로보노지원단)
토론 강용현 변호사[법무법인(유한) 태평양]
황윤주 실장(서울시50플러스 서부캠퍼스)

[발제문] 시니어 프로보노 활성화

김 한 변호사(시니어 프로보노지원단)[1]

1. 현황

1) 시니어 프로보노지원단의 태동

- 2017. 5. 31.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이 설립한 동천NPO법센터(센터장 유욱)의 주최로 “시니어 프로보노 활성화 간담회” 실시

- 2017. 6. 20.- 7. 11. 4주간 “시니어 프로보노 워크숍” 시행, 참여변호사들의 자발적인 의사로 “시니어 프로보노지원단(제1기)” 결성

- 2017. 10, 12,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변호사교육문화관 4층, 시니어 프로보노 지원단 현판식 거행 및 사무실 공간 마련

- 2018. 5. 9. - 5. 23. 제2기 “시니어 프로보노지원단” 워크숍 계획, 지원자 모집하여 시행

2) 구성과 활동내역

- 제1기 참여변호사는 18명

- 2017. 9. 18.- 12. 4. 10회에 걸쳐 서울시50플러스재단 서부캠퍼스에서 생활법률 강의 및 개별상담 실시

- 2018. 3. - 6. 10회에 걸쳐 같은 곳에서 생활법률강의 및 개별상담 시행 중

1) 서울종합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현재 시니어 프로보노지원단 제1기 회장직을 맡고 있음.

2. 최근 사회현상의 변화

1) 평생 경제활동 종사 개념에서 은퇴 및 연금생활 개념으로의 변화추세

- 그러나 미처 은퇴를 준비하지 못한 대다수 고령자의 노후문제 야기로 취약계층으로 전락

2) 수명의 연장으로 노후생활은 요양병원에서의 요양치료 경향증대

- 가족과 연락은 가능하나 사실상 가족 간의 유대감이나 교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의 쓸쓸한 노후생활을 하는 고령자층이 증가하고, 경제적으로 빈곤한 고령자로 방치되는 상황이 초래됨.

3) 전원생활에 대한 기대로 정년퇴직 내지 중도퇴직 후 귀농귀촌 풍조의 증가

- 긴급의료혜택이 필요한 노년기는, 도심에서 먼 전원생활보다는 119구조가 가능한 도시인근지역이 생활근거지로 바람직함.

4) 스마트폰의 확대 및 SNS를 통한 만남이 증대

- 인터넷의 발달과 스마트폰의 생활화로 상품구매에서부터 각종 생활에 필요한 욕구충족뿐만 아니라 취미생활, 문화생활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의 생활방식의 변화가 초래됨.

5) 혼밥, 혼술 등 개인적인 생활로의 추세

- “소가족 중심제”에서 “핵가족제”로의 변화에서 더 나아가 “1인 주거시대”로의 전환으로 이른바 원룸 주거형태의 발달과 이를 의식한 소비시장의 변모 및 생활상의 변화속에서 취약계층의 고립화가 문제됨.

3. 문제점 고찰

** 시니어 변호사들이 프로보노 활동에 적극 관심을 보이지 않은 이유

1) 변호사업을 유지하면서 인생2막의 공익활동을 하기에는 고비용의 문제

① 법무법인의 형태이건 개인사무소를 운영하는 변호사이건 간에 종래의 변호사업은 고비용의 지출을 요하는 법률서비스제공 사업임.

- 변호사로서 사회활동을 함에 있어 전통적인 변호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무실 운영(주로 법원 근처의 대로변에 위치한 건물이 대부분임)을 위한 건물 임대료, 직원 임금, 각종 운영비 등 고정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건수임 매출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 “인생 1막”과 “2막”을 확연히 구분짓기에는 무리

- 인생 2막으로서의 사회공헌과 공익활동으로 시야를 돌리려고 하여도, 지속적으로 사건수임을 하지 못하면 지출할 비용 때문에 다른 업무에 신경을 쓰기 어려운 실정으로 심리적인 불안이 수반되어 사건수임의 압박에서 해방되어야 함.

- 따라서 획기적인 제도보완과 지원대책이 마련되지 않고서는 시니어 프로보노 지원단의 활성화가 어렵다고 사료됨.

② 지속적인 법률지원을 필요로 하는 공익활동과 구조상의 문제

- 1회적인 공익활동으로 그치는 단순한 법률상담이나 법률강연 등이 아니라, 향후 바람직한 공익활동은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의 법률지원을 요하는 공익활동이 요구됨.

- 이를 운영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조직 내지 단체를 구성하여 그에 관한 내부관리 직원이 필요하고, 공익활동을 준비하여 실수요자와의 만남의 장을 기획하고 이를 홍보하여 현실화하기 까지 필요한 실소요 경비를 지원하는 체제를 이룩하지 않고는 원만한 활동을 기대하기 곤란함.

- 인생 2막으로서의 체계적인 봉사를 하려면 적어도 이를 위한 운영체제가 필요함

③ 시니어 프로보노 활동이 요구되는 특수전문분야에 대한 경험부족의 문제

- 시니어 변호사들은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의 사건에 관하여 상당한 이론지식과 경험 축적으로 다방면에서의 원숙한 멘토변호사로서의 활약이 기대됨.

- 그러나 최근에 관심의 대상이 되는 일부 특수전문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부족의 문제로 대두되어 종래의 기본지식과 경험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다소 역부족

2) 심리학적 측면에서 본 이해부족

- 변호사업에서 은퇴한 상당수의 변호사는 여러 가지 취미활동을 하면서 여가를 보내고 있는바, 이에 대해 멋진 인생의 후반부를 보내고 있다고 그동안 여겨왔음

- 그러나 심리학자 수잔 핀커(Susan Pinker)에 의하면, 그의 저서 “빌리지 이펙트(The Village Effect)에서 장수촌인 이탈리아 사르데냐에서의 사례연구를 통하여 장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는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는 인간의 접촉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직접 대면 내지 교류의 중요성을 지적하였음.

- 금주, 금연, 운동만으로 개인의 노후의 건강과 장수가 보장된다고 보는 것은 사회속에서의 존재감이라는 측면에서 한계가 있으며, 이웃과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고, 혼자인 시간을 줄이고 의미있는 접촉을 늘려가는 생활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그러면 “사는 보람”이 있고, “생기있는 삶”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됨.

4. 시니어 프로보노의 활성화 방안

1) 발상과 사고의 전환이 필요함

- “은퇴 후 유유자적하면서 자신의 취미활동 등으로 생활하는 방식”과 “변호사업을 유지하면서 사회와의 연계속에서 사회문제를 고민하고 대화하는 방식”에서 선택의 기로

- “나에겐 은퇴란 없다. 사정이 허락하는 한 평생 변호사로서 활동을 할 것이다.”

- 다만 종래의 변호사업은 고비용의 지출이 수반되는 법률서비스업으로 저비용의 변호사업으로의 변모가 전제되어야 함.

2) 공익활동 분야의 개발

- 그동안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 지원센터의 주관으로 실시한 “프로보노 라운드테이블”에서 여러 가지 주제로 다루었던 분야에 관하여 좀 더 중점적으로 연구개발하여, 이론적인 검토 및 통상적인 수임사건에서는 소외되었던 분야로 관심을 돌려야 할 것임.

- 각종 이슈가 되는 전문 분야의 “시니어 프로보노 커뮤니티” 또는 “주제별 분과위원회”를 결성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활동
  예) 연명의료결정 시니어 프로보노 커뮤니티, 장애인 시니어 프로보노 커뮤니티 등

3) 시민단체, 공익단체와의 연계활동 강화

- 전문 프로보노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 공익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하여 법의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이 필요.

- 예시적으로, 향후 의사 등 의료업계와 연계하여 전문 프로보노 활동의 협력 분야를 협의하고, 그들과 의료관련 문제점을 공동으로 연구하고 대처하는 적극적인 자세 필요(연명의료결정법 등과 관련하여 사후의 소극적인 대처가 아니라 원스톱 해결

측면에서의 사회문제 해결이라는 과제 실현)

- 구체적 방안(시니어 변호사들의 참여가 기대되는 분야)
  ① 공공후견 등과 관련하여, 장애인권익보호단체와의 연계로 공공후견에 참여
  ② 사회연대은행과의 연계로 시니어 브릿지 활동에 시니어 변호사 참여
  ③ 사회복지법인과의 연계로 협력방안 강구
  ④ 법률구조공단과의 연계로 법률상담, 조정에 시니어 변호사의 참여 강구
  ⑤ 연명의료결정 문제와 관련하여, 의료업계와의 연계로 죽음의 문제에 관한 생전의 논의 및 문제점 공동 연구와 사회문제 해결

4) 자원봉사로서의 패러다임의 변화

- 종래의 관 주도형 자원봉사로부터 자발적인 자원봉사로의 변화

- 서울지방변호사회:
  ① 변호사업의 법률상담은 유료상담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수렴하여 무료법률상담을 폐지한 이후 이를 보완하는 의미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무료법률상담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하는바, 이를 시니어 프로보노 지원단이 주축이 되어야 할 것임.
  ② 향후 시니어 프로보노 지원단에 대한 독립된 사무실 공간 필요
  ③ 시니어 프로보노 조직 및 운영 등에 대한 지원
  ④ 경유필증 비용의 면제 내지 최소화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임.

-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의 직역수호, 변호사의 수급문제 등으로 프로보노 활동에 대한 관심이 미약한 실정임.

- 전국적인 프로보노 활동으로의 확대를 위해서는 협회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프로보노 활동지원위원회 등 고려

5) 노인문제 해결의 주된 역할을 담당

- 초고령화사회에서의 노인문제를 국가차원에서의 해결만으로는 한계

- “시니어(Senior)의, 시니어(Senior)에 의한, 시니어(Senior)를 위한” 프로보노 활동 전개로 변호사가 민간주도의 주된 역할을 담당

6) 향후 시니어 프로보노 공익활동을 위한 펀드조성이 검토되어야

- 법원, 변호사회, 대형 로펌, 민간 후원자들과의 연계를 통하여 시니어 프로보노 활동에 필요한 기금마련을 위한 펀드조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공익활동이라고 하더라도 공익활동의 체계적인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이 마련되어야 공익활동을 제대로 수행될 것이기에 펀드조성을 통하여 시니어 변호사들의 공익활동을 유도하는 제도적인 장치라고 할 수 있음.

7) 법원과의 연계를 통하여 시니어 프로보노 법률지원 변호사 풀(Pool)을 제공하여 소송에 활용하는 방안 강구

- 가정법원에서의 성년후견, 공공후견 관련사건에의 시니어 프로보노 변호사의 활용

- 행정법원에서의 난민소송에서 외국어 구사능력이 있는 시니어 프로보노 변호사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

8) 해당 분야의 전문교육에의 참여 필요

- 변호사회나 관련 단체에서 실시하는 각종 전문 분야 교육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함.

9) 멘토 변호사와 멘티 변호사의 연계로 신규 변호사의 역량강화 지원

- 로스쿨 졸업 신규 변호사의 배출 후 “변호사실무수습”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 분야별 멘토 변호사 소규모 그룹 결성하여 회관내에서 정기적으로 모임 및 업무 지원
  예) 형사법 멘토 커뮤니티, 민사법 멘토 커뮤니티 등

* 마지막으로

- 변호사회 내부 회원 간의 의사소통 중요

- “무관심”에서 “다소 관심”으로, 다시 “다소 관심”에서 “적극 관심”으로의 변화 유도

[토론문1] 시니어 프로보노 활성화 방안

강용현 변호사[법무법인(유한) 태평양]

1. 왜 활성화가 되지 아니할까?

가. 변호사 각자의 문제

1) 준비의 미비
   마음가짐
   많이 부담스러울까?
   전문성이 부족하지 않을까?
2) 아직 더 일해야 하는데?
3) 어디 가서 무엇을 하지?

나. 제도 또는 지원 체계의 문제

1) 희망 변호사와 공익활동 수요자 간의 정보 불통
2) 공간적 제약
3) 지속가능성

2. 활성화를 위안 방안(제안)

가. 변호사 개인의 노력과 준비

1) 50+의 의미 : 일반직장인과 변호사의 차이
   일반직장인 : 은퇴 후 제2인생 설계
   변호사 : 장래 활동 가능기간(80세까지?) 활동하기 위한 사전 준비(은퇴×)

* 공익활동 참여하지 않던 변호사가 어느 날 갑자기 시니어 프로보노 변호사가 되기는 어렵다.
* 시작이 반이다. - 공익활동의 긍정적 효과, 중독성

2) 워보밸(work and probono balance) 장기 플랜

(예시)

50대 : 변호사 활동 절정기 – 공익활동 시작, 적합 분야 탐색, NPO와 network 형성

60대 : 변호사 시니어 역할 – 공익활동 활발히 참여, 고유업무와 공익활동 균형

70대 : 변호사 원로 역할 – 고유업무 최소화, 사실상 공익활동 전념

나. 변협 등의 시스템 구축

1) 준비에 대한 지원시스템 구축

정기적 세미나 등 교육 프로그램

변호사연수, 변호사대회 과정에 포함

(예) 동천 NPO법센터의 시니어 프로보노 지원단 프로그램

2) 공익단체와의 연계 시스템 구축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 동천 NPO법센터 등이 공익단체와 매칭 주선

(예) 동천 NPO법센터에서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매칭 – 매월 1회 방문, 상담, 무료변론

3) 시니어 프로보노 지원단을 전문분야별 pool로 구성하여 상호 협력 시스템 구축

4) 사무공간의 공유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 내 시니어 프로보노 지원단 변호사 공간 확장

다. 법제도 보완

무료변론 용이하도록 법제도 개선 모색

(예) 소송구조의 요건 완화 (인지대 문제)

3. 결어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 시니어 변호사들 각자의 공익활동에 대한 의지를 변호사단체가 활동 플랫폼을 만들어 체계화하면 우리 사회 발전에 큰 기여 가능

시니어 변호사 각자는 적은 시간을 들여 사소한 도움을 주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에도 수혜자로서는 큰 법적 조력을 받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음. - 법조에 대한 일반국민의 신뢰 제고에 기여

(예) 조선족 간병인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소원 사건

4. 발표자에 대한 질의

발표문 7면 “향후 시니어 프로보노 공익활동을 위한 펀드조성이 검토 되어야”

혹 어려운 여건에서 공익활동을 하고 있는 젊은 변호사들에 대해 위화감 조성 우려는 없는지?

[토론문2] 앙코르커리어의 첫 단추, 시니어 프로보노

황윤주 실장(서울시50플러스 서부캠퍼스)

1. 시니어 프로보노 활동에 대한 인식 전환 필요

시니어 프로보노 활동이 활성화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자원활동을 '개인의 관심'이나 '일부 개인의 역할'로 치부해버리는 풍토가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이는 프로보노 활동을 범사회적으로 확산하는 데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개인의 활동 역시 소극적인 수준이 머무를 수밖에 없게 만든다. 발제문을 보면 심리학적 이유로 시니어 변호사들이 프로보노 활동에 적극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이는 비단 변호사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대다수의 중장년세대들이 은퇴 전까지 치열하게 살아온 만큼 퇴직 후 쉬기를 바라는 욕구가 일부 있음은 인정한다. 더 이상 나인투식스(9to6)라는 근무환경에 매달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 혹자는 시간이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자원활동이라고 단정 짓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성인발달에 있어 중년은 이타심이 발현되는 시기이며 생산성이 극대화되는 시기이다.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은 중년 이후의 삶이 풍요로워지려면, 다음 세대들의 성장을 돕는 일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그것을 가리켜 '생산성(generativity)'이라고 하였다. 이는 공익활동에 나서는 프로보노의 지향점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중년기가 다음 세대를 위해 무엇을 남길 것인가 고민하는 시기라는 것은 은퇴 후 참여하는 자원활동이 더 이상 개인의 관심에서 참여하거나 시간이 많아서 활동하는 측면이 아니라는 반증이다. 시니어 프로보노는 시니어의 정체성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시니어의 사회적 역할이라는 맥락으로 접근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자원활동을 개인의 관심 영역으로 치부하게 될 때 겪는 또 다른 한계는 활동처가 한정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자신의 전문적 재능을 공익을 위해 기부하는 활동이 프로보노인데, 기부하기 위해서는 기부할 곳이 있어야 한다. 기부자와 기부 받는 곳이 공존해야 프로보노 활동이 비로소 성사되는 것이다. 그런데 전문적인 재능을 활용할 수 있는, 특히 공익 활동처라는 것이 개인이 관심을 가진다고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곳인가 하는 의문

이 뒤따른다. 개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자원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는 프로보노는 활성화되기 어렵다. 활동처를 쉽게 구할 수 없는 구조로 인해 프로보노가 시간적 여유가 있고 관심 있는 몇몇의 전유물로 생각되어지는 역효과를 낳기도 하기 때문에 프로보노에 대한 시각은 개인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며 사회적인 역할로 봐야하는 관점의 변화가 필요한 때라 할 수 있다.

2. 공익활동(제3섹터)에의 시니어 프로보노는 왜 활성화 되지 않는가

앞서 시니어 변호사들의 프로보노 활동을 개인적 측면이 아닌 사회적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인식 전환에 대해 이야기했다면 이 장에서는 활성화 방안에 대한 발제자의 원고를 바탕으로 공익활동의 실제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발제문에서도 제시했듯이 공익활동 분야에 대한 이해가 시니어 변호사들에게 필요하다. 공익활동을 주요 목적사업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비영리단체 등 제3섹터[1]라 칭하는 시민사회단체는 시니어들이 그동안 일해 왔던 방식과 매우 다른 업무 체계를 가지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시니어들이 공익활동에 나서기 전 제3섹터 업무 교육을 꼭 받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자원활동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지만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해도 서로의 경험치가 다른 대상들이 만나 활동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서로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일 것이다.

실제 서울시50플러스 서부캠퍼스는 2017년에 동천NPO법센터를 통해 배출된 제1기 시니어프로보노지원단 소속 시니어 변호사들과 함께 법률 멘토링을 진행하였다. 공익단체를 대상으로 한 법률 자문이라는 시니어 프로보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서부캠퍼스는 서울혁신센터(서부캠퍼스 공유사무실 포함)에 입주해있는 약 200개의 시민사회단체 및 50+단체들에게 법률자문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였다. 하지만 의외로 법률 자문 신청은 미비했다. 사전에 신청했던 단체에서도 법률적 문제가 생기거나 조금 더 조직이 성장하고 난 뒤 다시 신청하겠다고 보류하기도 하였다. 1기 프로보노지원단 변호사들은 2018년에도 프로보

1) 사회공헌활동과 일자리는 정부가 제공하는 범위로 국한되지 않는다. 자원봉사와 사회적 여가 활동뿐 아니라 비영리 민간단체(NPO), 사회적 기업, 커뮤니티 비즈니스(community business), 협동조합 등의 활동은 이미 우리가 미처 알고 있지 못한 사이에 시니어들을 포함한 많은 사회 구성원들에게 대안적 활동과 일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더구나 그 가능성과 기회는 계속해서 확장되는 추세이다. 우리는 이러한 영역들을 제3섹터(sector)라고 부른다(서울시50플러스재단 50+리포트 04호-⑦)

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공익단체로부터 법률자문 및 상담 신청은 여전히 유효하다. 단체가 아닌 개인 간의 법률 상담이라고 해서 공익 활동이 아니라고는 말할 수 없다. 2017년 프로보노 성과를 분석해보면 상담 신청자 대부분이 마을변호사를 활용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에 캠퍼스에서 실시한 50플러스 세대 맞춤형 법률 멘토링은 내담자의 만족도가 높았다는 평가다. 반면 변호사에 따라 준비가 부족하다는 아쉬운 피드백도 또한 있었다.

그렇다면 왜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법률 자문에 대해서 소극적이었던 것일까? 공익단체들이 대부분 소규모 집단으로 법률 자문을 구할 만큼 큰 조직이 아니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인 법적 문제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시민사회단체의 특성상 법률상의 도움을 받을 연계 자원도 의외로 많다. 굳이 시니어 프로보노를 요청할 필요를 못 느끼는 것 일수도 있다. 종합해보면 프로보노의 전문성이 강조되기보다는 시니어에 대한 고정관념 때문에 시니어 프로보노를 무조건 거부하는 편견도 한몫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공익단체의 편견에 대해 시니어 프로보노적 측면에서 합리적 의문을 한 번쯤은 해볼 필요가 있다. 자신의 전문적 재능이 과연 활동처에 온전히 사용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인식이다. 전문직 시니어 프로보노들은 내가 마음만 먹으면 봉사할 곳은 많을 것이고, 내 경험과 지식은 많은 도움을 줄 것이며, 도움 받는 기관에서는 나를 고마워할 것이고 나는 완벽하게 준비되어있다는 오해와 편견을 쉽게 갖는다. 그러나 발제자도 제시했듯이 법률과 관련된 시니어 프로보노 활동이 요구되는 분야는 특수하고 전문적인 곳이다. 그 분야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경험이 없으면 제대로 된 프로보노 활동이 어렵다. 공익단체에 대한 경험이 우선되어어야 한다고도 볼 수 있다. 시니어 프로보노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라도 관련된 영역에서 자원봉사를 하거나 관련 교육을 받으면서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는 자원봉사자의 패러다임이 변화해야 한다는 발제자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그렇다고 모든 문제를 시니어에게만 전가할 수는 없다. 시니어들의 노력만큼이나 시민사회의 인식개선도 필요하다. 제3섹터가 고정관념 때문에 시니어를 무조건 거부하는 경향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물론 프로보노는 자원활동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고용이나 채용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시니어 변호사들의 공익활동을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제3섹터로의 진입은 필수적인 만큼 시민사회단체의 인식 개선은 시급한 문제라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시니어 변호사들의 공익활동을 활성화시키면서 시민사회영역으로의 진

입을 확대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일까.

3. 「앙코르펠로우십」을 통한 시니어 프로보노의 공익활동 지원

앙코르펠로우십은 기업 퇴직 예정자나 지역사회의 퇴직자들을 모아서 사회적 목적을 가진 기관 및 단체로 펠로우십(fellowship)을 보내는 것을 말한다. 인턴하고 비슷한 성격으로 보이기도 하나 “펠로우(Fellow)”라는 일 방식은 정식의 고용은 아니지만,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일정 기간을 직원으로서 또는 프로젝트 교육기관 단위의 일에 유급으로 채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도 2017년부터 '50+NPO펠로우십 프로그램'을 운영해 25개 내외의 비영리단체 및 50명 내외의 50+세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이러한 앙코르펠로우십 프로그램을 시니어 프로보노 지원단에 접목시켜 볼 수 있을 것이다. 발제문에서도 향후 시니어 프로보노 공익활동을 위한 펀드 조성이 시니어 변호사들의 공익활동을 지속시키는 제도적인 장치라고 했던 것처럼 대한변호사협회가 주관이 되어 시니어 변호사들로 구성된 앙코르펠로우십을 운영 한다면 공익활동의 초석을 다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우선 펠로우십 프로그램을 통해 공익활동을 하고자 하는 시니어 프로보노 법률지원 풀(Pool)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고 시니어 변호사들의 전문 분야에 맞는 시민단체, 공익단체와 연계가 더 용이해질 수 있다. 시니어에 대한 고정관념, 혹은 잘 모르기 때문에 시니어 프로보노를 지원받기 주저하는 많은 공익단체들의 인식전환도 펠로우십을 통해 개선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앙코르펠로우십 제도를 통해 신규 변호사 및 후배를 양성하는 멘토로서의 기능도 수행할 수 있으리라 본다.

시니어 변호사들의 프로보노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협회나 조직화된 기구 차원의 지원 및 시스템이 필수이다. 구조적으로 뒷받침 되지 않으면 공익활동은 개인의 관심 영역에서 머물 수밖에 없다. 시니어 변호사들의 공익활동이 지금 당장의 개인적 만족을 넘어서 이 사회를 책임지고 있는 전문가들이 자발적으로 사회공헌에 참여하는 문화로 발전되는 트리거가 되기를 기대하며 원고를 마친다.

변호사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심포지엄

발 행 인 이 찬 희
발 행 처 서울지방변호사회
주 소 (06595) 서울시 서초구 법원로 1길 21(변호사회관)
전 화 02) 6200-6200
팩 스 02) 6234-0351
인 쇄 처 경성문화사(02-786-2999)

〈비매품〉